

#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2018. 10

강성호·류건식·김동겸



##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작년 8월에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예상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에 대한 준비도 그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고령 여성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대여명의 차이로 홀로 노후를 맞게 될 여성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여성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의 대표적 수단인 연금정책은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미흡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성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화와 여성의 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것으로, 이에 대비하여 선진국은 여성의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적연금 확대 과정에서 복지재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적연금을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배우자 특화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출산장려금 제공 등이 그 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고령 여성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금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후준비 문제를 살펴본 후 해외의 대응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적 연금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8년 10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 목차

---

요약 / 1

I. 서론 /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2. 연구의 차별성 / 15
3. 연구의 구성 / 17

II.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 / 18

1. 사회적 환경: 고령화 / 18
2. 경제적 환경: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 23
3. 소결 / 43

III.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 / 45

1.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 45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 / 50
3. 소결 / 52

IV. 해외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사례 및 시사점 / 53

1. 공적연금 부문 / 53
2. 사적연금 부문 / 64
3. 시사점 / 85

V. 여성 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 89

1.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적연금정책 효과 / 89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 98

VI. 결론 / 104

| 참고문헌 | / 106

| 부록 | / 113

## ■ 표 차례

---

- 〈표 I-1〉 수급권 형태 및 재원에 따른 여성 관련 연금의 유형 / 14
- 〈표 I-2〉 선행연구와 차별성 / 16
- 〈표 II-1〉 연령대별·성별 인구 현황(2017년) / 19
- 〈표 II-2〉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현황(2015년 기준) / 20
- 〈표 II-3〉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비중(2017년) / 21
- 〈표 II-4〉 연도별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 변화 / 22
- 〈표 II-5〉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2017년) / 25
- 〈표 II-6〉 성별 임금 수준 비교 / 27
- 〈표 II-7〉 고령자 1인 가구의 노후준비 방법(2015년) / 27
- 〈표 II-8〉 고령자(55~79세)의 연금수령 현황(2017년) / 28
- 〈표 II-9〉 국민연금 급여유형별 성별 수급 현황 / 29
- 〈표 II-10〉 부양가족연금의 성별 수급 현황 / 29
- 〈표 II-11〉 성별 빈곤율(2016년 기준) / 31
- 〈표 II-12〉 OECD 국가의 성별 경활률 / 32
- 〈표 II-1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성별 평등 지표 비교(2015년 기준) / 36
- 〈표 II-14〉 영국의 성별 은퇴준비 상황 비교 / 39
- 〈표 II-15〉 영국의 성별 연금저축갭 비교 / 39
- 〈표 II-16〉 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수급자 연령 및 가입기간 / 41
- 〈표 II-17〉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빈곤율(2013년 소득 기준) / 43
- 〈표 III-1〉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 관련 연금 유형 / 45
- 〈표 III-2〉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2017년) / 46
- 〈표 III-3〉 여성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현황 / 47
- 〈표 III-4〉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 49
- 〈표 III-5〉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및 판례 / 49
- 〈표 III-6〉 우리나라 공·사연금정책의 평가 / 50
- 〈표 IV-1〉 선진국의 여성 관련 공적연금제도 / 54
- 〈표 IV-2〉 주요국의 여성 유족연금 급여(2006년, 2013년) / 58
- 〈표 IV-3〉 영국의 다양한 연금분할 방법 / 59

## ■ 표 차례

---

- 〈표 IV-4〉 선진국의 여성 관련 연금인 크레딧 제도 / 60
- 〈표 IV-5〉 OECD 국가의 실직 및 육아에 대한 연금크레딧 / 63
- 〈표 IV-6〉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 운영 / 65
- 〈표 IV-7〉 미국 개인형 퇴직연금의 기여금 납입한도 / 66
- 〈표 IV-8〉 전통형 IRA의 소득공제 한도(2017년 기준) / 67
- 〈표 IV-9〉 캐나다 개인연금(RRSP)의 최대납입 한도액 / 70
- 〈표 IV-10〉 캐나다 개인연금(RRSP) 증도인출 시 원천징수세율(2018년) / 71
- 〈표 IV-11〉 호주의 배우자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2018년 기준) / 72
- 〈표 IV-12〉 일본 개인형 퇴직연금(iDeCo)의 납입한도액 / 74
- 〈표 IV-13〉 영국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세제체계 / 81
- 〈표 IV-14〉 호주 연금법과 세법상 유족인정 여부 / 82
- 〈표 IV-15〉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시 세제적용 / 82
- 〈표 IV-16〉 퇴직연금의 유족일시금 선택 시 세제적용 / 83
- 〈표 IV-17〉 2008년 칠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 84
- 〈표 V-1〉 총급여 구간별 연금저축 가입 및 급여소득자 현황 / 91
- 〈표 V-2〉 납세 여부별 성별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 / 92
- 〈표 V-3〉 남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2017년 기준) / 93
- 〈표 V-4〉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효과 / 96
- 〈표 V-5〉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전체) / 97
- 〈표 V-6〉 배우자 기여분의 연금소득개선 및 재정지출효과 / 98

## ■ 그림 차례

---

- 〈그림 II-1〉 연령대별 1인 가구 증감(2005년 대비 2015년) / 20
- 〈그림 II-2〉 기대여명 성별 격차(65세 시점) / 23
- 〈그림 II-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및 고용률 / 24
- 〈그림 II-4〉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 25
- 〈그림 II-5〉 1인 가구 소득과 연령대별 여성 1인 가구 소득 비교 / 26
- 〈그림 II-6〉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향후 가입 의향 / 30
- 〈그림 II-7〉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 33
- 〈그림 II-8〉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추이 / 33
- 〈그림 II-9〉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수행의 성별 격차(50세 이상) / 34
- 〈그림 II-10〉 급여 및 비급여 노동을 고려한 여성의 근로시간 / 35
- 〈그림 II-11〉 OECD 주요국의 성별 연금 격차 / 37
- 〈그림 II-12〉 EU 주요국의 성별 연금 격차(65~74세) / 38
- 〈그림 II-13〉 성별 총소득대체율(2016년 기준) / 42
- 〈그림 II-14〉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독신가구의 빈곤율 비교 / 42
- 〈그림 III-1〉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추이(1990~2017년) / 48
- 〈그림 IV-1〉 캐나다 공·사적 연금제도 체계 / 68
- 〈그림 IV-2〉 캐나다의 주요 사적연금 / 69
- 〈그림 IV-3〉 일본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 73
- 〈그림 IV-4〉 일본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 74
- 〈그림 IV-5〉 여성 연금수급자(65~79세)의 연금 격차(EU 28개국) / 85

## Improvement of Pension Scheme for Women

Korea's aging population is growing faster than expected,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surge in elderly women and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is context, we studied cases of women's pension reform in developed countries and searched for ways to secure old-age income for women.

The pension policy of Korean women is insufficient to supplement the labor market and is not reflected in the social value of domestic labor and is vulnerable to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On the other hand, women's pension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vary not only in public pensions but also in private pensions. In other words, there is spouse pension and split pension in private pension system, and private pension system is implemented for Old-age income reinforcement.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 analysis was carried out assuming that the related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Korea considering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analysis of economic effect is divided into income guarantee effect and fiscal spending effect.

According to this results, the effect of pension income improvement (tax deduction / payment) and expenditure effect of spouses were estimated to be 12.6% and 391 billion won, respectively.

The study argues that labor market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to improve women's income, arguing that public pensions should be improved and private pensions should be expanded.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right to receive pensions through private pension policies, allow IRPs for housewives, increase access to benefi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plit pensions and marriage pensions, and reform the tax system.



# 요약

## I. 서론

- 2017년 8월에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4%(726만 명)를 초과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함
  - 향후에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 20%, 2030년 24.5%, 2050년 38.1%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도 지금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준비해야 함
  -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 문제는 여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여성의 노후준비 문제를 살펴본 후 해외의 대응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적 연금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II.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

### 1. 사회적 환경: 고령화

- 고령기에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65세 이상인 노인 여성의 비중은 57.5%로 남성에 비해 15%p 높음
  - 여성의 사망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에 비해 더욱 낮아져 50세를 전후하여 여성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50대 사망률 성비는 2.9배)함

- 이러한 사망원인(사별) 이외에 이혼 등으로 인해 노인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특히, 노후준비가 덜된 채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이 노후를 맞게 되면 빈곤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선진국도 여성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와 유사하나 우리나라는 성별 기대여명 격차가 더 커 노인 여성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음
  - 2010~2015년 동안 OECD 여성은 3.2년, 우리나라 여성은 4.3년이 남성에 비해 기대여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2. 경제적 환경: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실업률, 근속기간 등 경제활동 상황은 결혼·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0.2%로 남성 71.1%에 비해 20.9%p 낮음
  - 여성의 실업률은 3.6%로 남성 3.8%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비경활자인 전업주부는 실업률 산출에서 제외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근속기간은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기준으로 11년 2.5개월이며, 남성(19년 3.7개월)에 비해 8년 1.2개월 적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연령화 될수록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아져 노인 여성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음
  - 여성 1인 가구의 56.9%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29.5%만 100만 원 미만임(2016년 기준)
  - 여성 1인 가구의 소득은 60세 이후에 특히 높은데, 80.2%가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1인 가구에서 여성 가구(30.2%)가 남성 가구(42.4%)보다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이 12.2%p 적었음
  - 55~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공·사적 연금의 합산)을 보면, 여성은 34만 원으로 남성 69만 원에 비해 35만 원 낮고 저연금에 편중(여성의 경우 10~25만 원 미만이 64.7%)됨
  
-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소득 기준으로 여성의 상대빈곤율은 21.6% (전체 남성에 비해 4.2%p 높음)이며, 이를 노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빈곤율로 판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됨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14.7%인 상황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46.5%이므로 동일 논리로 보면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50% 이상일 것임
  
-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 노후준비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취약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 OECD 35개국의 여성 경활률과 그 성별 격차는 각각 54.5%, 13.8%p(우리나라는 각각 52.1%, 21.8%p)여서 우리나라보다 양호하고 성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음
  - 2015년 이후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4.3%로 우리나라 37.2%에 비해 매우 적음
  - 선진국 여성의 노후준비는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고 이로 인해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EU 28개국에서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15.8%로 남성 11.2%에 비해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II.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

#### 1.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주로 공적연금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부양가족 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 등이 여기에 해당됨
  -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임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입자 혹은 수급자)의 사망과 그 수급권자의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수준(기본연금액의 40~60%)이 결정됨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부부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제도임
  - 출산크레딧은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상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은 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판례를 통해 퇴직금 및 개인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

- 고령화,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①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기능, ②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③ 취약계층 보호(소득재분배 등) 기능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 발생된 성별 노동소득(임금 및 사업소득) 격차를 보완하지 못함
  -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소득이 낮으며, 이로 인해 연금수급권 및 급여액 측면에서도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이러한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제도에 실업크레딧, 보험료 면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가사노동(예: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연금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은 가사노동(예: 출산, 육아 등)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연금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출산크레딧에 그침
-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소득재분배 등)가 연금제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
  - 선진국은 사적연금을 공·사연금정책의 파트너로 접근하면서 사적연금까지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IV. 해외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사례 및 시사점

### 1. 공적연금 부문

- 선진국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같이 보편적 연금수급권을 제공하거나,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하며, 육아기간 및 출산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여성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배우자연금을 도입함
    - 미국의 배우자연금은 배우자가 62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가산연금 형태로 지급됨
  -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배우자)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 배우자가 수급하는 노령연금의 50~70% 수준임

-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은 이혼 시 부부가 각자 취득한 연금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과 아동양육 크레딧을 확대 강화해 옴
  -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와 동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함

## 2. 사적연금 부문

### 가. 배우자를 위한 사적연금 운영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Spousal IRA) 1976년 세제개혁법을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개인퇴직계좌(IRA)에 보험료를 대신 납입이 가능하도록 함
    - 부부 합산 \$11,000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기여(Catch-up)까지 고려하면 총 \$13,000 납입 가능함(2018년 기준)
  - (캐나다 Spousal RRSP) 정부인증저축계좌(RRSP) 가입자가 배우자명의 개인연금계좌에 보험료 납입(소득공제 대상)이 가능함
  - (호주 Spouse Super Contribution Tax Offset)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인 경우 소득자가 배우자 명의 퇴직연금계좌(RSA) 또는 퇴직연금금(Super Fund)에 납입 시 세제혜택(세액공제 방식)을 부여함
    - 세액공제액은 납부액의 18%(최대 540달러 한도)임
  - (일본 iDeCo)의 경우 2017년 1월부터는 전업주부가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제도(iDeCo)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적립금 운용으로 얻은 이자와 배당금 등은 전액 비과세 되고, 급여 수령 단계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 나. 사적연금의 분할연금제 도입

-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분할연금이 사적연금제도에 명시적으로 도입·운영됨
  - (미국)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 제정을 통해, 주법원 등의 가사 관계명령이 연방법상의 요건을 충족 시 이혼 시 연금분할이 가능함
  - (캐나다) 퇴직연금의 경우 법령상 별도 규정 없이 가족법(Family Law Act)상의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사적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됨
  - (독일) 연금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수자영업연금제도 외에 2층과 3층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제도화되어 수행됨

## 다. 사적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사적연금에서 형성된 유족연금 급여액에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함
  - (영국) 연금개혁 과정에서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급여수령 방식과는 관계없이 연금 상속분(Death Benefits)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됨
    - 2015년 4월 이후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해 수령 형태(일시금 또는 부분인출)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호주) 세법상 유족에 해당되는 경우 일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은 유족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함

### 라. 출산지원금 및 추가지원

- 칠레는 2008년 연금개혁 과정에서 성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출산크레딧, 이혼 시 연금분할,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을 실시함
  - 자녀출생 또는 입양 시 정부에서 여성의 연금계좌에 “최저임금 18개월분 +  $\alpha$ ”의 추가금액(Bonus)을 납입하여 주는 방식을 도입함
  - 이혼 시 혼인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배우자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

## 3. 시사점

- 선진국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공적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
  - 공적부문의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유도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독립적 연금수급권과 함께 파생적 연금수급권 보장을 중요시함
- 한편, 사적부문에서는 전업주부 대상 별도의 사적연금 운영으로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은 배우자 사적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취업하지 않은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정비함
  - 영국, 호주 등은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급 시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노후소득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함

## V. 여성 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 1.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적연금정책 효과

- 본 연구는 현행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와 조세지출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첫 번째 방법(전업주부의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은 현행 연금과세 체계에서 전업주부의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분석임
  - 두 번째 방법(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추가 납부액이 현행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수준만큼 환급(면세자도 환급받음)해주는 것을 가정한 분석임
- (전업주부 적용 효과) 전업주부의 납부액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연금소득개선효과는 12.6%로 추정되고, 추가 가입 대상자(전업주부)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3천 910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동 방식에 의한 추가 가입대상 여성 배우자(전업주부) 규모는 최대 115만 1천 명으로 추정됨
  - 추가 가입한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을 현재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인 269만 9천 원으로 설정하면,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4만 원으로 추정됨
- (환급형 세액공제 효과) 연금소득개선효과는 12.7%로 산출되었으며, 연간 재정지출효과는 대상 배우자가 모두 가입(125만 6천 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4천 110억 원 정도의 조세지출이 발생함
  - 기본적으로 면세자의 가입률이 2.5%이므로 면세자의 배우자도 그 만큼 가입할 것으로 가정하면 재정지출은 5%(면세자 2.5%와 배우자 2.5%)의 가입자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됨
  - 동 방식에 의한 추가 가입대상 여성 배우자(전업주부) 규모는 최대 125만 6천

명이 됨

- 추가 가입한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을 현재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인 257만 8천 원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2만 7천 원으로 추정됨
- 연금소득개선효과와 재정지출효과를 과세자와 면세자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금소득개선효과의 경우 납세자는 12.6%, 면세자는 14.8%임
  - 연간 재정지출효과의 경우 대상자 모두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납세자에 지원되는 금액은 3천 910억 원, 면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92억 원으로 추정됨

##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 가. 연금정책 기본방향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함
  - 워라벨 취지에 부합하면서 경력단절기간 등에 대한 실업급여 및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함
-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여성정책 수준까지는 최소한 충족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여성 관련 공적연금을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경제적 여건의 성별 격차를 고려한다면 공적연금 역할을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사적연금 역할의 확대 필요성이 있음

## 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

-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등 여성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 가족구성 및 부양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가입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미국, 캐나다와 같이 배우자 IRP의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허용하거나, 일본과 같이 전업주부를 가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분할연금, 부부연생연금의 제도화 및 종신연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분할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분할연금 및 부부연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재무적 및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사적연금에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에서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관련 IRP(개인연금 포함) 상품 개발 시(예, 세제적격 및 비적격 등) 현행 세제혜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재원은 일시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를 강화하여 그 납세액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음

---

# I.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8월에 우리나라의 고령화율<sup>1)</sup>은 14%(726만 명)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sup>2)</sup> 2025년 20%,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sup>3)</sup> 동 추세는 현재 가장 높은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일본(미국, 독일)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각각 24년(71년, 42년)과 12년(16년, 33년)이 걸린 것보다<sup>4)</sup> 각각 16년과 8년에 불과할 정도로 훨씬 빠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 만큼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지금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고령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인 여성(특히 고령 독신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후준비 수준은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성의 기대수명(0세 기준 기대여명)은 2015년 기준으로 85.2세이며 이는 남성의 기대수명인 79.0세보다 6.2세 많아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여성의 수는 남성에 비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남녀의 결혼연령격차<sup>5)</sup>가 약 3~5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고령기에 홀로 남게 되는 여성(고령 독신 여성)의 생존기간은 약 10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 가구주 가구는 일반적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장수를

---

1) 65세 이상 인구 수(노인)가 증가하는 현상임(노인인구비율(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수/전체 인구 수)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3)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6), "2017 고령자 통계"

4) 한국은행(2017)

5) 결혼 시점에서 남녀의 연령격차를 의미함

맞게 되거나 이혼하게 된다면 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고령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이슈는 대부분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퇴직 이후 고령기에는 근로·사업소득 등이 감소하므로 연금소득과 같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강성호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연금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이라 함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정책이라기보다 출산, 육아<sup>6)</sup>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해 연금수급권(연금획득 또는 급여액 증가)을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석재은 2004; 권문일 2006; 유호선 2010; 정연택 2017). 즉, 출산, 육아 등으로 연금제도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적 정책의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정의는 공적연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배우자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육아크레딧 제도 등이 있다.<sup>7)</sup>

일반적으로 출산, 양육 등과 같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보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사회적인 기여행위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가 취약해진 여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sup>8)</sup>

물론 연금제도는 기여를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수급액이 결정되는 기여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도 본인의 기여에 의해 발생하는 독립적 연금(개별적 연

6) 양육크레딧의 목적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및 출산율의 제고 등임(유호선 2010; 김진·이정우 2013)

7) 제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람

8) 2001년 12월 레켄 유럽위원회(Laeken European Councils)에서 3개 범주 내 11개 목표를 기본으로 하는 연금개혁 원칙을 제시(EC(2006, 8))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강성호 외 2007)

금수급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독립적 연금은 자신의 기여에 의한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기여에 의한 분할연금이 대표적이다. 한편, 국가에 따라서는 최저보증연금이나 출산크레딧, 육아크레딧, 보험료 지원 등 조세방식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성 관련 연금은 자신의 기여라기보다 소득 활동을 하는 남성 배우자의 기여에 의해 발생된 연금수급권에 의해 파생된 연금, 즉 파생연금(파생적 연금수급권)<sup>9)</sup>의 성격이 강하다.

파생연금 또한 배우자의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기여성 원칙을 충족한다. 즉, 여성 관련 연금은 자신의 기여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기여나 정책결정에 의해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칭)가족연금(정책연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관련 연금은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적 성격의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1〉은 우리나라의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정의될 수 있는 여성 관련 연금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표 I-1〉 수급권 형태 및 재원에 따른 여성 관련 연금의 유형

재원	수급권 형태	개별적 수급권 (독립 연금)	파생적 수급권 (파생 연금)
보험료		노령연금(자신의 기여)*, 분할연금(배우자의 기여)*	모두 배우자의 기여: 유족연금*, 배우자연금, 부양가족연금*
조세		최저보증연금, 출산크레딧*, 육아크레딧, 보험료 지원	유족연금

주: \*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자료: 권문일(2006)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한편, 출산 및 육아크레딧은 여성의 출산(입양포함) 및 육아(돌봄서비스)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ISSA 2017, p. 2), 재원은 일반적으로 조세에 의해 충당되며 노령연금에 부가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사적연금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공적부

9) 권문일(2006) 등에 의하면, 공적연금에서는 개별적 및 파생적 수급권으로 구분하여 여성연금을 구분하고 있음

문은 이미 상당한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고, 추가적인 복지제도로 도입할 경우 불가역성의 프레임에 노출되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sup>10)</sup> 반면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sup>11)</sup>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과정에서 경제활동 이력이 취약한 여성에게 초래될 노후준비의 문제가 어떤 경로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공·사적 연금정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차별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과거 공적연금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공적연금 분야에서 다루어진 여성 관련 연금의 주요 내용은 ‘노후소득보장·형평성(소득재분배)’, ‘출산·육아크레딧, 유족, 이혼 등’, ‘경제활동(경력단절여성: 경단녀 등)’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노후소득보장·형평성(소득재분배)’과 관련된 연구들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탈빈곤과 관련된 성별 연금격차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로는 정연택(2017), 석재은(2012), 권문일(2006), Chybalski and Marcinkiewicz(2016), OECD(2018)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출산·육아·크레딧, 유족, 이혼 등’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갖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기여를 인정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자는 연구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용하 외(2016), 유호선(2016), 김경아 외

10)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는 그 특성상 축소보다는 확대되어 가는 현상이 있음(거제타임즈(2016. 6. 13). “[복지칼럼:김원배]선거와 복지국가의 불가역성이론”). 이와 관련하여 복지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도 복지확대 기초의 유지는 복지제도의 불가역성을 방증하고 있음(최병호 2014, pp. 89~129)

11)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인 401(k) 제도를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매칭 기여 방식 적용 이후 근로자들의 연금 가입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들이 있음(OECD(2017a); OECD(2017d); 강성호·김동겸(2018))

(2014), 홍남희(2015)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시장에서 발생된 경제활동단절이 연금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다미(2017), 강성호·김영옥(2012), OECD(2017e)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에서도 수립되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을 보면 여전히 공적연금 분야에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이 논의되어 왔을 뿐 사적연금 분야에서 여성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은 없었다. 물론 논의 범위를 확장해서 살펴보면, 그동안 노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사적연금 측면에서도 수행된 바 있으나(류건식 외 2017a; 2017b), 여성에 대한 사적연금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동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다만, 일부 국내 연구들에서 사적연금 부분을 언급하면서 여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김수성 외 2016, pp. 183~208)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제도 내에서의 분할연금, 출산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류건식 2012)도 있다. 그러나 동 연구들은 여성 관련 사적연금 역할에 대해 필요성만 제시했을 뿐 심층적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I-2〉 선행연구와 차별성

연구분야 주요내용	공적연금 (기초연금 포함)	사적연금
노후소득보장·형평성	정연택(2017), 석재은(2012), 권문일(2006), Chybalski & Marcinkiewicz(2016), OECD(2018)	김수성 외(2016), 류건식(2012), Camila Arza(2015)
출산/육아크레딧, 유족, 이혼 등	이용하 외(2016), 유호선(2016), 김경아 외(2014), 홍남희(2015)	European Parliament(2016)
경제활동 (경단년 등)	이다미(2017), 강성호·김영옥(2012), OECD(2017e)	-

###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정책은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개인이 직면한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고령화와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성별 격차 현상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정책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공·사적 연금정책을 고찰하고, 사적연금정책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사적연금정책을 활용한 이유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본다. 동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 관련 사적연금 상품 개발이나 정책안 마련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에서는 제4장 해외사례에서 검토된 주요 사적연금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사례에서의 여성정책의 주요 사례들과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연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II.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연금제도는 근로·사업소득의 일정비율만큼 기여(보험료)를 하고 여기에 기여기간(가입기간)이 반영되어 수급액이 결정되는 기여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금수준은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근로시기에 발생한 소득격차는 은퇴 후 연금격차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환경(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실태 등)의 성별 격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고령화 현상,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적 환경: 고령화

#### 가. 우리나라의 여성 고령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5천 2백만 명)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거의 동일하나 연령이 40세를 넘어가면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60세 이후인 고령기에는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인 노인 여성의 비중은 57.5%로 남성에 비해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여성의 증가 추이는 성별 사망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전 연령 기준으로 사망률 성비(남성 사망률/여성 사망률)는 1.2배여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 성비는 증가하다가 50대(50~59세)에서 사망

를 성비는 2.9배로 최대가 된다.<sup>12)</sup> 이로 인해 50세를 전후하여 여성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I-1〉 연령대별·성별 인구 현황(2017년)

(단위: 천 명, %)

연령대	계	여성		남성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51,779	25,923	50.1	25,856	49.9
20세 미만	9,740	4,704	48.3	5,036	51.7
20~40세 미만	14,180	6,819	48.1	7,361	51.9
40~60세 미만	17,193	8,495	49.4	8,698	50.6
60~80세 미만	9,036	4,796	53.1	4,241	46.9
80세 이상	1,630	1,109	68.1	521	31.9
고령자(65세 이상)	7,076	4,070	57.5	3,006	42.5

주: 비중은 성별 상대비율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6), "2017 고령자 통계"

가구를 중심으로 성별 관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520만 3천 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 가구가 50.2%(261만 가구)를 차지한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이 43.2%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세 미만(16.6%)과 50대(15.3%)가 많다. 남성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17.4%라는 것과 비교하면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는 남성은 젊은 층에서, 여성은 고령 층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12) 통계청 보도자료(2018. 2. 28), "2017 고령자 통계"

〈표 II-2〉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현황(2015년 기준)

(단위: 천 가구, %)

연령대	여성			남성		
	가구 수	구성비	비중	가구 수	구성비	비중
전체	2,610	100.0	(50.2)	2,593	100.0	(49.8)
30세 미만	432	16.6	(45.7)	513	19.8	(54.3)
30~39세	343	13.1	(36.0)	610	23.5	(64.0)
40~49세	308	11.8	(36.2)	542	20.9	(63.8)
50~59세	400	15.3	(45.6)	478	18.4	(54.4)
60세 이상	1,128	43.2	(71.5)	450	17.4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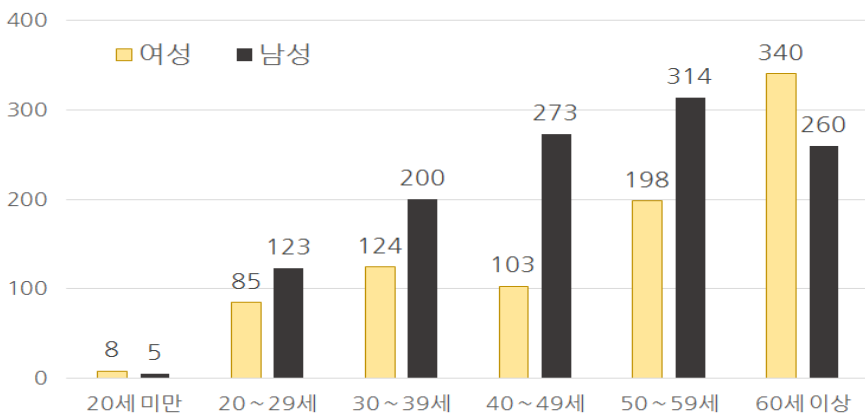
주: ( )안은 성별 상대비율(비중)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연령대별 1인 가구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과 2005년(10년간)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하에서는 남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고령 가구일수록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연령대별 1인 가구 증감(2005년 대비 2015년)

(단위: 천 가구)



주: 1인 가구 증감=2015년 1인 가구 수-2005년 1인 가구 수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로 인해 2017년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는 전체 가구의 30.3%(591만 6천 가구)를 차지하고, 향후 2020년 31.6%, 2030년 3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3)</sup> 한편,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는 원인을 혼인상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미혼인 경우’, 40~50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사별한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가 많아지는 주요 원인은 사별 혹은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이혼에 의한 여성 가구주 가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노후준비가 덜된 채 이혼한 여성이 노후를 맞게 되면 빈곤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3〉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비중(2017년)

(단위: 천 가구, %)

연령	전체(천 가구)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체	5,916	23.4	26.5	31.3	18.9
19세 이하	41	99.5	0.5	-	0.0
20~29세	606	91.0	7.5	0.1	1.4
30~39세	887	46.8	41.2	0.9	11.1
40~49세	1,144	19.7	42.8	5.9	31.6
50~59세	1,216	8.0	35.4	21.6	35.0
60~69세	878	4.7	20.3	55.1	20.0
70세 이상	1,145	1.4	4.9	89.6	4.1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편, 사별에 의한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앞서 본 남성의 사망률과 여성 기대여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기대여명은 남성 18.2년, 여성 22.4년으로 여성이 4.2년 더 오래 산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 추이는 현재(2015년)와 과거의 기대여명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20년(1995~2015년) 동안 남성은 4.8년, 여성은 4.9년, 그리고 최근 10년(2005~2015년) 동안 남성은 2.7년, 여성은 2.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기대여명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여성 가구주 비율 추이: '10년 26.1% → '15년 29.4% → '17년 30.3% → '20년 31.6% → '30년 34.8%(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표 II-4〉 연도별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 변화

(단위: 년)

연도	전체		남성		여성	
	기대여명	성별 격차 <sup>1)</sup>	기대여명	2015년과 격차 <sup>2)</sup>	기대여명	2015년과 격차 <sup>2)</sup>
1995	15.7	4.1	13.4	4.8	17.5	4.9
2005	17.7	4.1	15.5	2.7	19.6	2.8
2015	20.3	4.2	18.2	-	22.4	-

주: 1) 여성 기대여명-남성 기대여명으로 산출함

2) 2015년 기대여명-각 연도별 기대여명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6), "2017 고령자 통계",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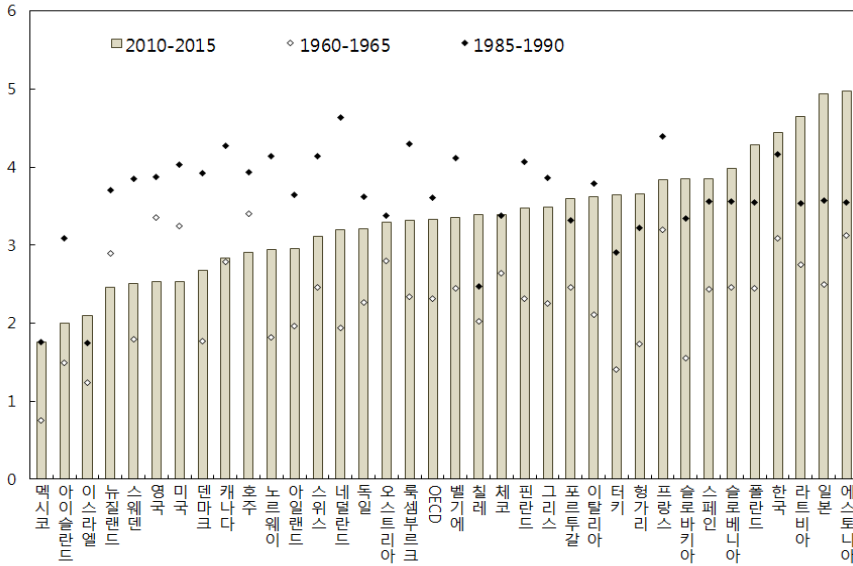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여성의 수가 매우 증가하고 고령기에 독거노인 여성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 대한 노후준비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주요국의 여성 고령화

이러한 여성의 고령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도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령화는 성별 기대여명 격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OECD(2015b)에서 1960~2015년(55년) 동안 65세 시점의 기대여명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서 노인 여성의 기대여명은 노인 남성에 비해 1960~1965년 동안 2.2년, 1985~1990년 동안 3.4년, 2010~2015년 동안 3.2년 긴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우리나라는 1960~1965년 동안 3년, 1985~1990년 동안 4.1년, 2010~2015년 동안 4.3년 정도, 노인 여성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2〉 기대여명 성별 격차(65세 시점)

(단위: 년)



주: 1960~1965년, 1985~1990년, 2010~2015년의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65세 시점에서의 성별 기대여명 격차임  
 자료: OECD(2015b)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 여성이 성별 기대여명 격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노인 여성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기대여명의 격차는 노인 여성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고령화로 인한 여성의 규모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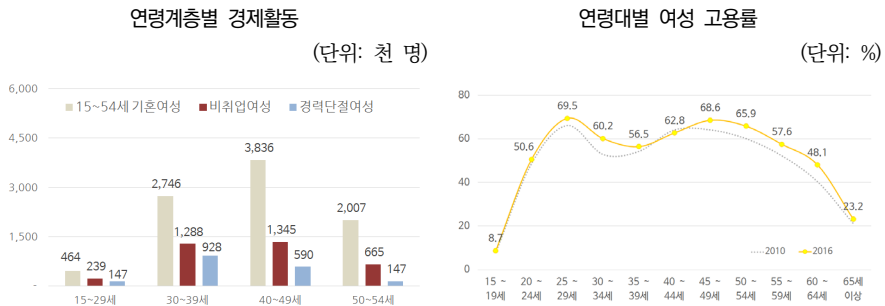
## 2. 경제적 환경: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 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여성에 대한 노후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 노후준비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은 고용률, 실업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 후반에 가장 낮았다가 다시 증가하는 M자형 특성을 갖는다. 2016년 기준으로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69.5%로 가장 높고 이어서 40대 후반(68.6%), 50대 전반(65.9%)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2016년 여성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34세에 7.3%p, 60~64세에 7.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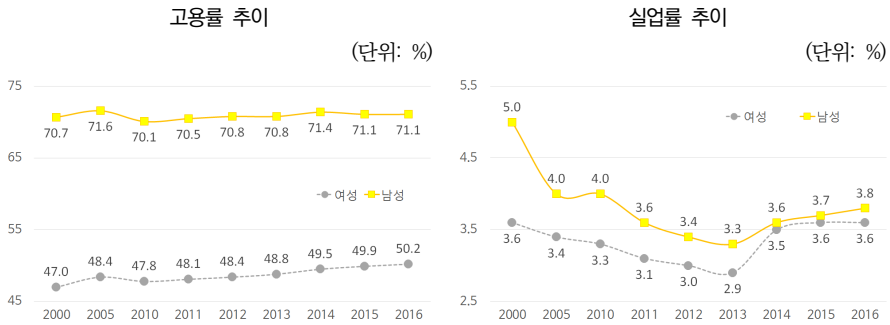
〈그림 II-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및 고용률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11. 29),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편 〈그림 II-4〉에서와 같이 성별 고용율과 실업률 추이를 비교하면, 2016년 기준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남성 71.1%에 비해 20.9%p 낮았으나, 여성의 실업률은 3.6%로 남성 3.8%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줄어들고, 실업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에서 성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9%p로 상당히 크고, 실업률의 경우 비경활자인 전업주부는 실업률 산출에서 제외되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 여성의 소득활동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4〉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주: 1)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15~64세 인구로 정의함(고용률=(15~64세 취업자 수/15~64세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2018)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생애기간 동안 근속기간을 통해서도 파악되는데,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보면 여성은 11년 2.5개월로 남성 19년 3.7개월에 비해 8년 1.2개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동질의 노동시장에 근무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차이로 노후준비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5〉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2017년)

(단위: 천 명, %)

구분	계 <sup>1)</sup>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
전체	7,032 (100.0)	1,202 (17.1)	1,259 (17.9)	2,112 (30.0)	1,380 (19.6)	1,079 (15.3)	15년 3.8개월
남성	3,564 (100.0)	279.8 (7.9)	356.1 (10.0)	1,129.8 (31.7)	993.1 (27.9)	805.0 (22.6)	19년 3.7개월
여성	3,468 (100.0)	921.7 (26.6)	902.8 (26.0)	982.3 (28.3)	386.6 (11.1)	274.3 (7.9)	11년 2.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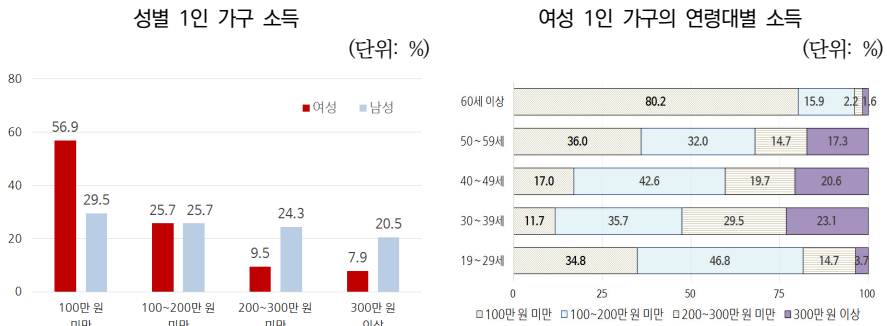
주: 1) 55~64세 인구 중 현재 취업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 취업자를 포함함

2) 괄호 안은 구성비율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7. 1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6), “2017 고령자 통계”

둘째, 여성의 소득수준을 보면 2016년 여성 1인 가구의 56.9%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매우 낮다. 남성 1인 가구는 29.5%만 1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여성 1인 가구의 저소득화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소득을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후부터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 규모가 많아져, 60세 이후에는 80.2%가 100만 원 미만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연령화 될수록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아져 노인 여성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림 II-5〉 1인 가구 소득과 연령대별 여성 1인 가구 소득 비교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편, 임금소득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2016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86만 9천 원으로 남성의 64.1% 수준이었으며, 시간당 임금 수준도 1만 1,507원으로 남성의 68.4% 수준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성별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표 II-6〉 성별 임금 수준 비교<sup>1)</sup>

(단위: 천 원, 원, %)

연도	월평균 임금	남성	여성	비율 <sup>2)</sup>	시간당 임금	남성	여성	비율 <sup>2)</sup>
2006	1,742	2,030	1,248	61.5	9,400	10,819	6,959	64.3
2008	1,945	2,265	1,413	62.4	10,996	12,677	8,208	64.7
2010	2,023	2,361	1,477	62.6	11,155	12,880	8,370	65.0
2012	2,216	2,569	1,654	64.4	13,145	14,968	10,245	68.4
2014	2,353	2,761	1,742	63.1	14,587	16,754	11,339	67.7
2016	2,498	2,918	1,869	64.1	14,690	16,819	11,507	68.4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 규모 사업체 대상. 매년 6월 기준 정액 및 초과급여(특별급여 제외)  
 2) 남성=100.0일 때의 여성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각 년도: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셋째, 노후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2015년 고령자 1인 가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2.5%로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14.4%p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인 가구에서 여성 가구(30.2%)가 남성 가구(42.4%)보다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이 12.2%p 적었다.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34.3%)이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24.3%) 순으로 많았다.

〈표 II-7〉 고령자 1인 가구의 노후준비 방법(2015년)

(단위: %)

구분	준비함	소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sup>1)</sup>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sup>2)</sup>
1인 고령 가구	전체	(32.5)	100.0	34.3	10.9	8.5	4.1	24.3	15.6
	남성	(42.4)	100.0	36.0	16.4	7.3	9.4	18.9	9.2
	여성	(30.2)	100.0	33.8	9.1	8.9	2.4	26.0	17.7
전체 고령자 가구 <sup>3)</sup>	(46.9)	100.0	28.7	13.5	7.5	5.0	28.9	15.1	1.2

주: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을 포함함  
 2)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함  
 3) 전체 고령자 가구는 1인 가구 외 모든 가구유형을 포함한 고령자 가구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청 보도자료(2017), "고령자 통계"

55~79세의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공·사적 연금의 합산)을 보면, 여성은 34만 원으로 남성 69만 원에 비해 35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대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150만 원 이상의 고연금층이 13.5%이고 연금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크게 분포되어 있으나, 여성의 경우 10~25만 원 미만이 64.7%로 절대 다수여서 저연금에 편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였다.

〈표 II-8〉 고령자(55~79세)의 연금<sup>1)</sup>수령 현황(2017년)

(단위: 천 명, 만 원, %)

구분	55~79세	비중	남성	비중	여성	비중	
인구	12,916	100.0	6,111	100.0	6,805	100.0	
연금수령자	5,847	45.3	3,034	49.6	2,814	41.3	
평균 수령액(만 원)	52		69		34		
연금 액	소계	5,847	100.0	3,034	100.0	2,814	100.0
	10만 원 미만	39	0.7	11	0.4	28	1.0
	10~25만 원 미만	2,738	46.8	917	30.2	1,821	64.7
	25~50만 원 미만	1,532	26.2	903	29.8	629	22.4
	50~100만 원 미만	796	13.6	616	20.3	179	6.4
	100~150만 원 미만	232	4.0	179	5.9	53	1.9
	150만 원 이상	511	8.7	408	13.5	103	3.7

주: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을 말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7. 1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각 년도 및 5월 자료

공적연금 중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되는 유족연금, 분할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6%와 유족연금의 92.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독립적 연금수급권인 노령연금 수급비율의 경우 남성(67%)에 비해 여성(33%)이 절반정도에 그쳐, 여성의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9〉 국민연금 급여유형별 성별 수급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노령 연금	계	3,637	(100.0)	1,139	1,045	787	498	167
	남성	2,438	(67.0)	757	722	534	325	100
	여성	1,199	(33.0)	382	323	254	173	68
분할 연금	소계	26	(100.0)	13	9	3	1	0
	남성	3	(11.4)	1	1	1	0	0
	여성	23	(88.6)	12	8	3	1	0
유족 연금	소계	500	(100.0)	108	122	115	99	56
	남성	37	(7.4)	5	6	7	8	10
	여성	463	(92.6)	102	116	108	91	4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남성 12.6%에 비해 여성은 87.4%로, 대부분 여성이 수급하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연금의 급여수준(배우자 기준 월 2만 원)은 낮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sup>14)</sup>

〈표 II-10〉 부양가족연금의 성별 수급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계	2,260 (100.0)	624 (100.0)	560 (100.0)	431 (100.0)	645 (100.0)
남성	285 (12.6)	78 (12.5)	23 (4.1)	41 (9.4)	144 (22.3)
여성	1,975 (87.4)	546 (87.5)	537 (95.9)	391 (90.6)	501 (77.7)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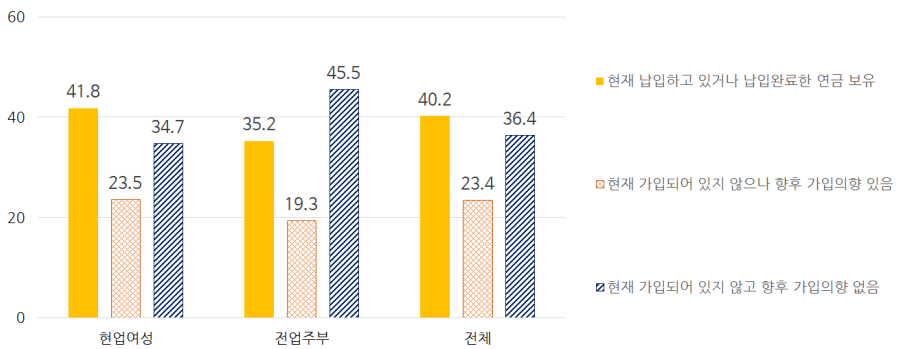
한편, 현업여성(경제활동자)과 전업주부(비경제활동자)로 구분하여 개인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현업여성에 비해 개인연금의 가입수준과 향후 가입의향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6). ‘개인연금 가입 비율’을 보면,

14) 부양가족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람

현업여성은 41.8%, 전업주부는 35.2%로 전업주부가 현업여성에 비해 6.6%p 낮았다. 한편, '가입의향이 있는 비율'의 경우 현업여성 23.5%, 전업주부 19.3%로 전업주부가 4.2%p 낮았고, '가입의향이 없는 비율'의 경우 현업여성 34.7%, 전업주부 45.5%로 전업주부가 10.8%p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향후 가입 의향

(단위: %)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6)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령하고 있는 총연금(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산)의 성별 격차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 노인 여성의 연금소득은 월평균 15만 원으로 남성(36만 4,000원)의 41.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60만 3,403원)의 25% 이하라는 점에서 노인 여성은 빈곤에 취약하다고 하겠다. 한편 EU(유럽연합) 회원국의 65세 이상 여성의 월평균 연금이 121만 원으로 남성(199만 원)의 61%여서 선진국의 노인 여성도 연금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의 경우도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성숙도, 급여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연금수준은 열악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소득 수준, 노후준비 방법 등을 중심으로 남성과 비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은 성별 빈곤율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인 여성의 빈곤상황을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빈곤율은 높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전체 여성의 빈곤율<sup>15)</sup>은 21.6%(전체 남성에 비해 4.2%p 높음)였으나, 노인 여성만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14.7%<sup>16)</sup> 수준이나 이를 노인가구 빈곤율로 보면 46.5%<sup>17)</sup>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빈곤하다는 점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표 II-11〉 성별 빈곤율(2016년 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빈곤율	시장+공적이전 소득 빈곤율	시장-공적지출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갭
전체	19.5	16.7	18.9	16.0	35.4
남성	17.4	14.7	16.9	14.0	34.1
여성	21.6	18.7	20.9	17.9	36.4

주: 1) 시장소득: 근로·자영·임대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액 등

3) 공적지출: 사회보험료 등

4)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5) 빈곤갭: 빈곤선과 자신의 소득(빈곤층 대상) 간의 갭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18. 8. 15일 기준), 개인특성별 빈곤율

## 나. 주요국 여성의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이러한 여성의 경제 및 노후준비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우려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도 산업화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추진 배경이 되었던 주요국 여성의 경제 및 노후준비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 빈곤율은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율)과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이 있으며, 여기서는 상대빈곤율을 의미함

16) 통계청 e-나라지표(상대빈곤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2&stts\\_cd=401204](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2&stts_cd=401204))

17) KOSIS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 구분별), 가처분소득 기준(2016년 기준)

앞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국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 노후준비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OECD 35개국의 여성 경활률과 그 성별 격차는 각각 54.5%, 13.8%p였으며, 이를 주요국 15개국으로 비교하면 여성 경활률과 성별 격차는 각각 60.2%, 11.4%p로 나타났다(〈표 II-12〉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의 여성 경활률은 우리보다 양호하고, 성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12〉 OECD 국가의 성별 경활률

(단위: %, %p)

국가	전체	남성(A)	여성(B)	격차(A-B)
한국	62.8	73.9	52.1	21.8
일본	60.0	70.4	50.3	20.1
캐나다	65.7	70.3	61.3	9.0
미국	62.8	69.2	56.8	12.4
덴마크	63.6	67.8	59.4	8.4
독일	61.0	66.6	55.6	11.0
아이슬란드	83.8	87.8	79.8	8.0
아일랜드	60.2	67.5	53.2	14.3
네덜란드	64.1	69.7	58.7	11.0
노르웨이	64.5	66.9	62.1	4.8
스웨덴	72.1	74.4	69.7	4.7
스위스	68.6	74.5	62.8	11.7
영국	62.9	68.6	57.5	11.1
호주	64.8	70.6	59.2	11.4
뉴질랜드	69.8	75.3	64.5	10.8
OECD 주요 15개국	65.8	71.6	60.2	11.4
OECD 35개국	61.2	68.2	54.5	13.8

주: 15세 이상 대상(미국은 16세 이상), 각 국가의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s)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18. 4. 30 기준),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둘째, 2015년 이후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4.3%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군이며, 우리나라의 격차는 37.2%로 인도, 남아프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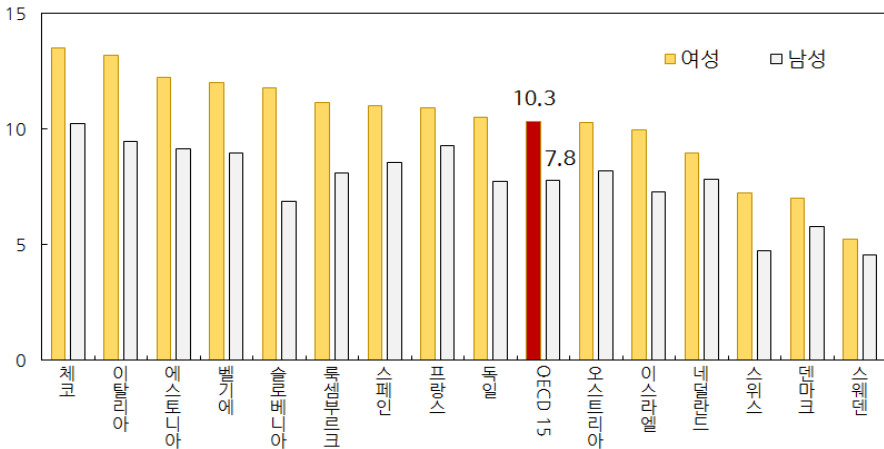


이러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여성 근로자가 저소득 직군에 종사한다는 것 외에 여성 유급근로자 규모(대상 여성의 56.2%)가 남성 유급근로자에 비해 20%p 낮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OECD Korea Policy Center 2016).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상자 중에서 성별로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sup>18)</sup>(Informal daily)를 처리하는 비율은 다르지만,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15개국에서 여성의 10.3%, 남성의 7.8%는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비공식 업무의 56.2%(10%/7.8%)를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스웨덴의 경우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수행 비율(여성 5.3%, 남성 4.1%)이 가장 낮았고 성별 격차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의 57%(5.3%/9.3%)를 여성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비공식 업무에서 완전한 성평등의 달성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9〉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수행의 성별 격차(50세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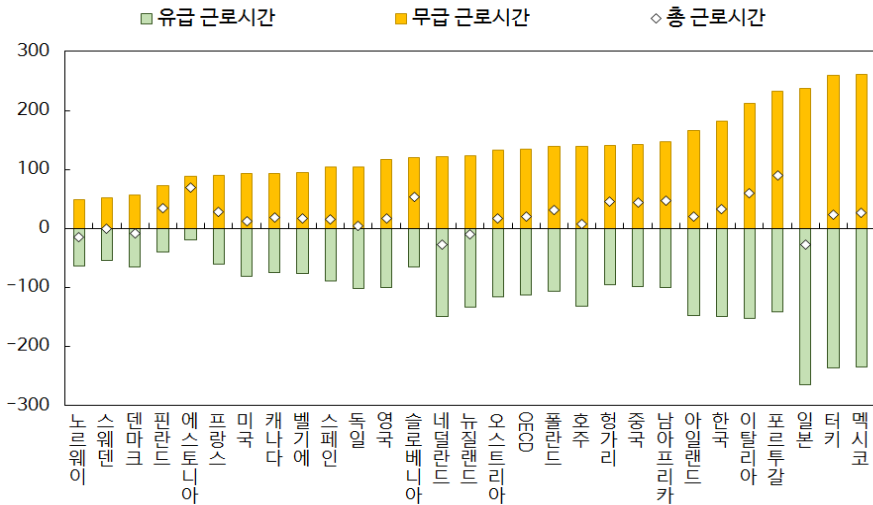


자료: OECD(2017e)

18) 임금 혹은 사업소득 형태가 아닌 가사노동 혹은 무급가족종사업무를 의미하며 시장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임

또한 노동형태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여 여성의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은 급여보다 비급여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임금을 받지 않는 곳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 국가들에서 성별 상용근로자(Full-time job)의 근로기간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4.9년 정도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 급여 및 비급여 노동을 고려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위: 1일당 분)



자료: OECD(2017e)

한편, OECD 국가의 교육수준, 관리자, 고용주 비율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성에 비해 1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표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성에 비해 9%p 낮았다. 여성관리자 비율 격차를 보면, OECD 국가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리자 비율이 37.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79.0%p 낮아 OECD 격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고용주 비율 격차를 보면, OECD 국가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주 비율이 3.3%p 낮았으며,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4.4%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성별 평등 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p)

구분	고등교육 이수율 격차 (25~34세, 2015년)	여성 관리자 격차 (2015년)	여성 고용주 격차 (15~64세, 2016년)
OECD 평균	-11.9	37.7	3.3
OECD 최고	0.6(터키)	79.0(한국)	4.6(이스라엘)
OECD 최저	-28.4(라트비아)	11.4(라트비아)	1.7(노르웨이)
한국	-9.0	79.0	4.4

자료: OECD(2017e), p. 23; <https://www.oecd.org/korea/Gender2017-KOR-kr>

앞의 선진국의 성별 경제상황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성별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이러한 성별 경제적 격차는 연금 격차 등 노후소득보장의 격차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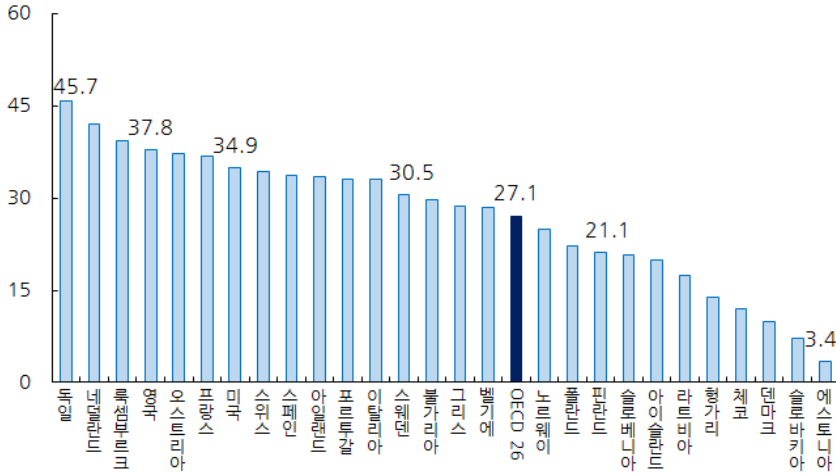
D'Addio(2015)에 의하면, OECD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별 연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은 낮고 그 격차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정의한 성별 연금 격차(Gender pension gap)는 남성의 총연금액(공·사적 연금 모두 포함) 대비 성별 연금 격차로 나누어 산출된 것이며, 성별 연금 격차는 OECD 25개국 기준 2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OECD(2017b) 분석에 의하면, 독일 여성의 연금 격차는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소득갭과 파트타임 일자리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성별 갭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성의 연금수준은 남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9) <http://www.oecd.org/gender/data/newoecdandaanalysisrevealingthewidegapinpensionbenefitsbetweenmenandwomen.htm>

〈그림 II-11〉 OECD 주요국의 성별 연금 격차

(단위: %)



자료: OECD(2017c)

한편, Bettio et al.(2012)에 의하면 여성은 사적연금 제도에 적게 가입하기 때문에 성별 연금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연금소득 기준으로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에서 성별 연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교육수준, 혼인상태, 기대여명, 고용상태의 차이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WBG(Women’s Budget Group, 2017)에 의하면 영국의 높은 성별 연금 격차의 원인으로 여성의 낮은 임금, 자산조사에 의한 크레딧 적용, 짧은 기여기간, 세제혜택의 문제(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혜택이 발생하지 않음), 자동등록 사적연금(Auto-enrolled Private Pensions) 및 자발적 소득비례연금(VESPA: Voluntary Earnings-related State Pension Addition)에 대한 여성의 실질적 배제 등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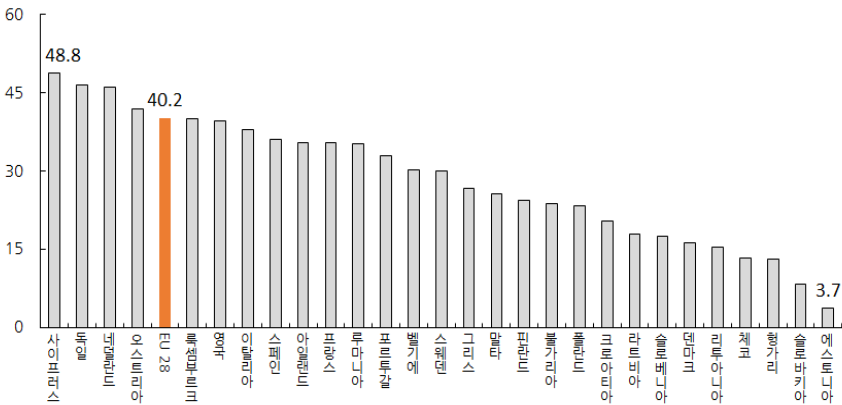
유럽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약 40%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20)</sup> 이는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약 16% 적다는 점에서 퇴직 후 연금소득의 격차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EU 국가들 사이에서 성별 연금 격차는 3.7~48.8%로 분포하며 그 차이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하

20) European Parliament New(Interview 자료)

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성별로 동일한 임금 수준이었으나, 다른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의 경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격차가 커진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를 겪는 동안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져 취약계층에서 연금이 감소함에 따라 연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12〉 EU 주요국의 성별 연금 격차(65~74세)

(단위: %)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7)

이러한 문제는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노동시장 여건과 연금과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연금정책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추진한 이유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선진국 여성의 노후준비 현황과 관련하여 영국의 성별 은퇴 준비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1)</sup>

먼저,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 여성 또한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고 이로

21) Scottish Widow(2017)

인해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퇴직을 위한 저축액을 비교하면 여성(£64K)은 남성(£125K)의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여성은 몇 가지 이유로 남성에 비해 적절한 노후저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언급되는데,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퇴직연금의 자동 가입을 위한 최저기여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소득수준<sup>22)</sup>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 II-14〉 영국의 성별 은퇴준비 상황 비교

구분	여성	남성
퇴직을 위한 저축액	£64K	£125K
DC제도 매월 납입액	£80.57	£149.13
매월 자동 납부액	£72.34	£91.75
연간 £10,000 이하 소득자 비율	46%	33%
22~29세 중 퇴직을 위한 저축이 없는 비율	22%	18%

주: 영국 1파운드(£)당 환율은 1,480원(매매 기준, 2018. 4. 27일 기준)  
 자료: <http://reference.scottishwidows.co.uk/docs/2017-women-retirement-report>

다음으로, 이혼과 같은 가족분화가 발생할 경우 여성의 노후준비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이혼자의 경우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을 하지 못하는 비율은 여성 24%, 남성 12%로 여성이 남성의 두 배였다. 또한 이혼으로 퇴직준비가 악화된 비율도 여성 40%, 남성 19%로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표 II-15〉 영국의 성별 연금저축액 비교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퇴직을 대비하여 적절한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	52	59
이혼자 중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을 하지 못하는 비율	24	12
이혼으로 퇴직준비가 악화된 비율	40	19

자료: <http://reference.scottishwidows.co.uk/docs/2017-women-retirement-report>

22) 2012년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22세부터 연소득이 2012년 3월 기준으로 £8,105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NEST의 적용 대상으로 하였음([http://institute.nps.or.kr/js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6.jsp](http://institute.nps.or.kr/js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6.jsp))

23) <http://reference.scottishwidows.co.uk/docs/2017-women-retirement-report>

그러나 이혼 시 가장 중요한 노후 자산인 연금에 대해서는 논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혼 여성 중 연금수급권을 획득한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은 부부 중 42%가 이혼을 경험하는데, 이혼 부부 중 71%는 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따르면 이혼자의 11%만 연금분할(Pension sharing)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혼 시 연금자산보다 다른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부 중 약 9%만이 연금분할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마도 연금분할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필요하고 이러한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균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연금저축(Pension savings)으로 약 £132k를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반적 영국(UK) 임금인 £26k의 5배 수준이다.

한편, 이혼과 자산 축적과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본 Angela A. Hung et al.(2015)에 의하면, 30대에 이혼한 여성의 자산 축적 상태가 50대에 이혼할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젊을 때 이혼하는 여성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후 빈곤에 처할 여성이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선진국 여성의 노후준비 상태를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소득과 가입기간이며, 두 요소의 작용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되고 근로시점의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 소득대체율이 된다. 소득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유럽 주요국들의 평균 연금 가입기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비기여기간 포함)을 보면, 전반적으로 30~40년 정도 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입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근로기간보다 가입기간이 다소 긴 이유는 비기여기간의 일부(예: 출산, 육아, 실업 등)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표 II-16〉 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수급자 연령 및 가입기간

(단위: 세,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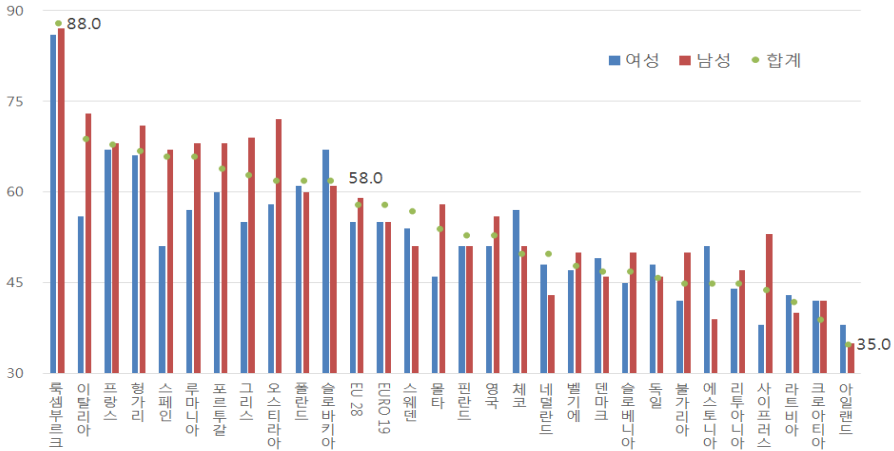
국가	연금 수급개시자의 평균 연령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비기여기간 포함)
덴마크	62.1(62/62.3)	27.7(35.7/20.3)
그리스	60.4(61.4/58.6)	25.1(27.5/20.8)
스페인	62.9(62.9/63)	38(40.3/30.4)
프랑스	60.2(59.8/61.5)	35.75(40/31.75)
이태리	60.3(60.5/60)	32.1(34.9/27.9)
포르투갈	63.7(63.3/64.3)	28.5(32.3/23.9)
핀란드	59.5(59.4/59.6)	31.9(33.3/30.6)
스웨덴	64.7(64.8/64.7)	37(40/34)
영국	62.3(62.7/61.9)	35(42/26)

주: ( ) 안은 (남성/여성)의 연령과 평균가입기간을 의미함  
 자료: 유호선·이지은(2011): EU(2009)

EC(2018)는 총소득대체율(Aggregate replacement ratio)을 55~59세 연령대의 소득 대비 65~74세의 연금소득으로 정의하여 성별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총소득대체율은 35(아이슬란드)~87%(룩셈부르크) 범위에 있고 EU 28개국의 평균은 5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총소득대체율은 35(아이슬란드)~88%(룩셈부르크) 범위에 있고 EU 28개국의 평균은 61%였다. 여성의 총소득대체율은 38(사이프러스)~86%(룩셈부르크) 범위에 있고 EU 28개국의 평균은 55%로 분석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총소득대체율은 6%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13〉 성별 총소득대체율(2016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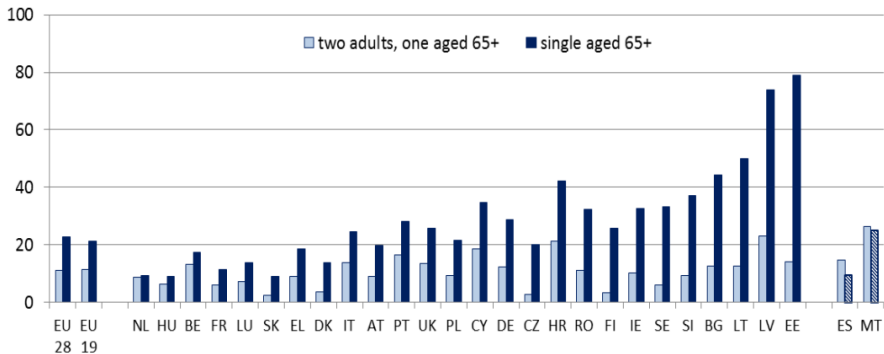


자료: EC(2018), P. 48

다섯째, 선진국 여성의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가구를 부부와 독신 가구로 구분할 경우 독신 가구에는 초고령 노인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독신가구의 빈곤율은 노인 여성의 빈곤율로 의제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부부가구에 비해 독신가구의 빈곤율이 두 배 정도이므로 노인 여성의 빈곤율이 높을 것임을 방증한다.

〈그림 II-14〉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독신가구의 빈곤율 비교

(단위: %)



주: 국가코드는 'https://namu.wiki/w/ISO%203166' 을 참조함(예: EE(에스토니아), LV(라트비아))

자료: EC(2018), p. 29

한편, EU 국가(2013년 소득 기준)를 대상으로 이러한 성별 빈곤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EU28 국가에서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15.8%로 남성 11.2%에 비해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7〉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빈곤율(2013년 소득 기준)

(단위: %)

국가	전체	남성			여성		
		소계	독신	동거	소계	독신	동거
벨기에(BE)	16.1	15.5	17.2	15.1	16.5	18.1	15.3
덴마크(DK)	9.8	9.1	16.3	6.2	10.4	13.3	7.6
독일(DE)	16.3	14.0	23.0	11.0	18.4	29.5	10.9
아일랜드(IE)	10.9	9.3	14.2	8.0	12.2	15.3	10.6
프랑스(FR)	8.6	7.1	9.1	6.5	9.6	14.4	5.4
이탈리아(IT)	14.2	11.0	15.1	10.0	16.6	25.5	10.7
룩셈부르크(LU)	6.3	5.7	8.4	5.0	6.8	7.7	6.2
네덜란드(NL)	5.9	4.9	3.6	5.2	6.8	8.8	5.4
스웨덴(SE)	16.5	10.3	25.5	5.5	21.7	38.3	6.6
영국(UK)	17.9	14.7	17.6	13.9	20.6	29.3	14.6
EU28	13.8	11.2	16.3	9.9	15.8	23.1	10.9

자료: EC 홈페이지, "At-risk-of-poverty rates by age"

이러한 노인 여성의 빈곤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성에게 닥친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 3. 소결

기여성 원칙에 의해 연금의 노후소득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2장에서는 성별·국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사회·경제적 환경(고령화, 경제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여성의 고령화는 남성보다 심하고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상황도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성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에 대해 더디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그동안 다양한 여성 노후준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후준비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활률,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함에 따라 근로환경 또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EU 국가들의 성별 근로기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4.9년 정도 적고, 임금소득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 즉,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적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차이는 생애평균소득의 성별 격차로 추정하면 16.3%로 나타나고 이러한 격차는 연금소득의 성별 격차를 36% 확대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p>24)</sup> 노동소득의 격차가 연금소득의 격차로 전이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금소득의 격차는 노인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선진국 여성의 노인 빈곤율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해 높으나,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대표적인 이유로는 ①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준이 낮고, ② 공·사적 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③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sup>25)</sup>과 수급률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경제상황 등이 여성의 노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제3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떠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을 추진하였고,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4) EC(2018), p. 73

25)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4.3%(2016년 4월)로 남성 74.9%에 비해 낮음.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낮은 이유는 비정규직이 많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원인임

### Ⅲ.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사적연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공적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출산시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 또한 재정적 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역할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성별 소득 격차가 연금소득 격차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반면,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파트너로서 사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상당한 기능들이 사적연금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공적연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공적연금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Ⅲ-1〉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 관련 연금 유형

구분	내용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 부모에 대해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입자 및 수급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분할연금	이혼 시 가입자의 배우자였던 자(5년 이상 혼인기간)에게 노령연금의 50% 지급
출산크레딧	2자녀 이상 출산 시 18~50개월 가입기간 인정

첫째, 부양가족연금(국민연금법 제52조)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입자의 소득(혹은 납부액)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며, 노령연금<sup>26)</sup>을 받을 때 부가하여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급여수준(2017년 기준)의 경우 배우자는 연간 25만 원, 자녀와 부모는 연간 17만 원 수준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 조정된다.

〈표 III-2〉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2017년)

지급대상	요건	부양가족연금액 <sup>1)</sup>
배우자	배우자가 국민연금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연 252,090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연 168,020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sup>2)</sup> 또는 장애2급 이상	

주: 1)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2) 노령연금 수급연령(향후 65세까지 상향)에 맞추어 1953년 출생자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1~5세 상향조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이러한 부양가족연금이 도입된 이유로는 부부 중 1인만 가입하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sup>27)</sup>되어 연금수급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양가족연금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예: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에 대한 가치를 공적연금제도에 일정 부분 반영하려는 취지가 내포된 것이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현실적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부양가족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는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둘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2조~제76조)은 수급권자(가입자 혹은 수급자)의 사망과 그 수급권자의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수준(기본연금액의 40~60%)<sup>28)</sup>이 결정된다.

26) 노령연금=기본연금+부양가족연금으로 구성됨

27)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는 부부 모두 가입을 의무화하였지만, 자영업에서 협업배우자, 전업주부 등은 적용제외하였음

제2장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족연금의 대부분은 여성 배우자(92.6%)에게 발생되므로 대표적인 여성 관련 공적연금이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자인 여성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파생연금이다. 특히, 재혼 시 유족연금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남성 부양적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있고, 이는 재혼 후 황혼이혼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노후빈곤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이전의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을 여성 50세, 남성 60세로 구분하였는데(국민연금법 제63조), 이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부양을 전제로 연령 차이를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성평등 사상의 확산 등으로 인해 2007년 이후에는 남녀 모두 55세부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되었다.<sup>29)</sup> 여전히 여성이 유족연금의 대부분을 수급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제도상 직접적인 성불평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하겠다.

셋째,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부부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국민연금 제64조). 수급조건은 이혼할 당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도 수급연령(2018년 현재 62세 이상)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만 있다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지역연금으로 확대되었다.

〈표 III-3〉 여성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현황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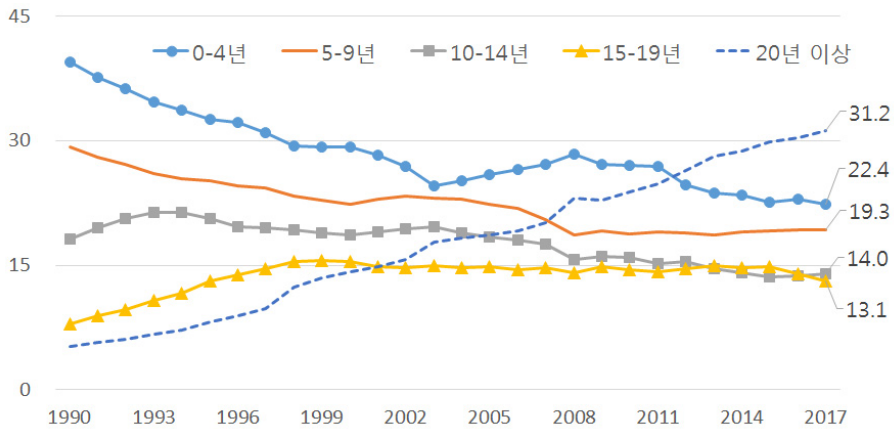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노령연금	869	869	982	1,202
분할연금	7.3(0.8)	8.6(1.0)	13.0(1.3)	22.4(1.9)

주: ( ) 안은 노령연금 대비 분할연금 비율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28)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국민연금법 제74조)  
 29) 유족연금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급여 제한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도 성 형평성 관념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음(Luckhaus 2000: 임미영·한인숙 2002, pp. 167~185; 강성호 외 2007; 김영옥 외 2011 재인용)

고령화 과정에서 황혼 이혼의 증가로 인해 분할연금의 수급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증가하고 있지만(표 III-3) 참조), 분할연금 수급 조건인 혼인 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22.4%)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연금수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유호선 2013; 유호선 2018; 박진화 2015).

〈그림 III-1〉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추이(1990~2017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1), “2017년 혼인·이혼 통계”

넷째,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에서 제공하는 크레딧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으로 기여함에 불구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어 연금수급권에 제약이 생긴 경우 그 해당기간만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크레딧으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으며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는 출산크레딧<sup>30)</sup>을 들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같은 사회적 기여 행위에 대해 연금수급을 확대보장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유호선 2010; 김진·이정우 2013).

30) 선진국의 경우 출산크레딧 외에 양육크레딧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둘째 자녀 출산부터 적용하고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I-4〉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자녀 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추가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18개월)	48개월 (+18개월)	50개월 (+2개월)

자료: 국민연금법 제19조 참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은 판례를 통해 퇴직금 및 개인연금에 대해 분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판례를 통해 지급사례가 있는데, 현재 퇴직금과 개인연금에 있어서는 분할연금이 인정되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판례가 아직 없었으나, 발생한다면 퇴직금과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에 의해 사적연금의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자칫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III-5〉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및 판례

구분	규정	판례
퇴직금	미존재	존재 -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 필요 - 이혼 당시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불확실 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조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
퇴직연금		미존재
개인연금		존재 -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 존재

##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

제2장에서 살펴본 여성의 고령화,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①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기능, ②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③ 취약계층 보호(소득재분배 등) 기능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여기서의 공·사적 연금정책의 평가기준은 여성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개인의 노후소득보장 관점) 적립금 운용, 제도 운영 비용 등은 평가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표 III-6〉 우리나라 공·사연금정책의 평가

내용	공적연금	사적연금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기능	일부 있음(출산크레딧)	없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	없음	없음
취약계층 보호(소득재분배 등) 기능	있음	없음

### 가.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기능 미흡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기여와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발생된 성별 격차는 연쇄적으로 성별 연금소득 격차로 전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소득 및 장기가 입자는 연금소득도 증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도 유리하게 된다. 즉, 연금제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이것이 노동시장과 연계되면 또 다른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여성의 경우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찍이 선진국들은 공·사적 연금의 여성가입 및 수급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예로 실업이나 휴직 시 가입기간 인정(실업크레딧, 보험료 면제기간 등), 소득재분배 기능의 탑재 등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기능은 공적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에도 그 기능을 부여하는 공사협력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미반영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예,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연금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 주부는 적용제외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도 가사노동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면 퇴직연금의 가입기회가 상실되고 이로 인해 수급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사노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단절이 많은 여성은 짧은 연금 가입기간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연금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현재 베이비부머 등 50대 후반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에게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매우 낮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연금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확대보장<sup>31)</sup>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 취약계층 보호(소득재분배 등) 기능 취약

고령화,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제도는 고유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중요하고, 유족연금, 배우자연금, 분할연금 등이 대표적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이다. 이 연금들은 주로 저소득 노인 여성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에만 일부 존재하고 사적연금에는 존재하지 않고

31) 일본의 경우 포괄적인 보험료 면제제도를 시행하나, 우리나라는 납부예외정도에 그치고 여성에 대한 별도의 조치로 출산크레딧 정도에 그침

있다. 이는 사적연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노후소득 상품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사적연금을 공·사연금정책의 파트너로 접근하면서 사적연금에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서도 제4장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여서 여성 관련 연금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는 적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관련 연금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적연금까지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지원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공적연금에서만 일부 시행되고 있고 사적연금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성별 연금 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문제가 연금제도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역할 범위가 노후소득보장 전체로 이해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이 평가절하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은 미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은 여성의 경제여건 및 노후준비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연금정책을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특히 연금정책을 통해 상당한 성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장에서는 선진국들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연금정책을 공적 및 사적연금정책으로 구분하여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금정책 개선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 IV. 해외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사례 및 시사점

---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특히 여성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후보장과 관련된 연금정책들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정책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해외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여성 관련 연금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이나 연금수급권 확보 차원에서 여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둔다.

본 장에서는 공적 및 사적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공적연금 사례는 다른 연구들에서 상당히 조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별보다 사례별(기능별)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연금정책 사례를 기능별로 구분한 이유는 비교가능성 또는 이해도 측면에서 국가별로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해외의 연금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1. 공적연금 부문

선진국들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같이 보편적 연금수급권을 제공하거나, 배우자연금(Spouse Pension or Widows' Pensions),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s) 그리고 분할연금을 지급하며, 육아기간 및 출산에 대해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다(류연구 외 2008; 김영옥 외 2011).

〈표 IV-1〉 선진국의 여성 관련 공적연금제도

국가	해당 국가
배우자연금	미국 등 일부 국가(우리나라: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모든 국가
분할연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육아크레딧	일본, 유럽 대부분 국가(우리나라 ×)
출산크레딧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 가. 배우자연금

선진국의 배우자연금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여성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양가족연금과 취지는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자연금은 국가마다 운영방식이 다양하나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배우자연금은 배우자가 62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가산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그러나 부부 중 일부 배우자의 사망 등과 같이 배우자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부양가족이 다수일 경우 최고급여수준을 정하여 본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혼 시 배우자연금은 피보험자와 독립적으로 지급(개별적 연금수급권 보장)되며,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배우자연금액은 달라진다. 즉, 이혼한 피보험 배우자의 생존 시 배우자연금은 균분하여 50%(합산 100%), 사망 시 100%가 된다(정연택 2017; ISSA 2016).

영국도 기초연금(BSP: 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에 배우자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동 제도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이며,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의 기여에 연계

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이때 배우자연금의 최고급여액 수준은 週 £61.2(2011년 기준)이며, 이는 기초연금의 60% 수준에 해당한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캐나다의 경우 노인 부부 중 한 명만 OAS와 GIS<sup>32)</sup> 수급자인 경우 이들 부부에게 최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75년에 배우자수당(SPA: the Spouse's Allowance)을 도입하였다. 1979년에는 OAS를 수급하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배우자가 65세 이하인 경우 배우자수당을 계속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65세가 되어 유족배우자가 OAS 수급대상이 되거나, 유족배우자가 소득발생으로 GIS 수급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중단된다. 1985년부터는 60~64세의 모든 홀아비와 과부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가 2000년 이후 수당 및 유족배우자수당 제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명맥은 사라지게 되었다.

스위스의 경우 남편이 수급하는 노령연금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배우자연금(Ehepaarrente)이 존재하였으나, 2001년부터 '1인 1연금의 원칙', 즉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연금은 2003년부터 폐지되었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 나.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피보험자의 피부양가족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유족은 배우자이다.

유족연금액은 일반적으로 사망 배우자가 수급하는 노령연금의 50~70%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100%까지 제공된다(ISSA 2016).

미국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혼인 기간은 최소 9개월이어야 하고, 유족배우자가 장애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다. 유족연금액 수준은 65세의 퇴직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전액이며, 조기에 수급하면 71.5~99%로 감액된다. 이혼한 배우자도 재혼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황혼 이혼(60세 이상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재혼 시에도 유족연

32) 캐나다의 1층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연금(OAS: Old Age Security)과 이를 보충하는 소득보충보장제도(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있음

금이 유지된다.

독일의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사망한 피보험 배우자(남편)가 최소 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혼인기간은 최소 1년이어야 한다. 소액배우자연금(SSP: Small Spouse's Pension)은 재혼하지 않으면 유족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지급되나, 2002년 이전에 결혼하거나 동거하였다면, 그리고 1962년 1월 2일 전에 출생하였다면 기간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거액배우자연금(LSP: Large Spouse's Pension)은 소액배우자연금(SSP)의 수급자격이 있고 45세(2029년 까지 47세로 인상) 이상이거나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배우자연금의 급여액은 사망 피보험자가 62세까지 살았다고 간주하여 산출되며 기간 제한 없이 지급받는다(ISSA 2016).

이러한 유족연금들은 재혼 시 중단되며, 유족 배우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순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액은 그 순소득의 40%까지 감소된다. 다만, 재혼 시 연금수급자격이 없어지나 24개월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는 있다. 재혼 후 다시 이혼하거나 재혼 배우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BMAS 2015: 정연택 2017 재인용).

스웨덴의 유족연금은 조정배우자연금(Adjustment Pension)과 일반배우자연금(Widows' Pension)으로 구분된다. 조정배우자연금은 등록혼 및 사실혼에 관계없이 65세 이하인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급여수준은 사망 피보험자의 NDC<sup>33)</sup> 노령연금액의 55% 수준이며,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월이나 18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2개월이 추가된다. 또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급여액은 임금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일반배우자연금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결혼한 여성(1944년 이전 출생자)에게 제공되며, 1945년 이후 출생한 여성은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사망 배우자는 스웨덴에서 최소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했어야 한다. 65세 이하인 유족 배우자는 조정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일반배우자연금을 받게 된다. 유족 배우자가 50~64세이거나 17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급여액(Base Amount)<sup>34)</sup>의 90%를 지급

33) 스웨덴의 공적연금인 명목확정기여연금(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을 의미함

받는다. 유족 배우자가 50세 이하인 경우 매년 기본급여액의 6.7%만큼 줄어든다. 또한 사망 피용자가 받았던 소득비례노령연금의 40%가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급여액은 임금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ISSA 2016).

추가배우자연금(Premium Spouse's Pension)<sup>35)</sup>의 수급권은 피보험자가 동 제도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유족 배우자에게 발생한다. 이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급여는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최저보증배우자연금(Guarantee Spouse's Pension)<sup>36)</sup>은 65세 이하이고 조정배우자연금과 일반배우자연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지급된다. 40년 동안 거주한 경우 완전한 배우자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최저보증배우자연금은 재혼(사실혼 포함) 혹은 유족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중단된다.

사망 피보험자가 40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였다면 유족 배우자는 연간 94,356크로나(SEK)를 지급받게 된다. 거주기간이 40년 이하인 경우 급여액은 매년 2.5%씩 감소된다. 유족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비례연금을 받는다면 최저보증배우자연금은 줄어든다. 최저보증배우자연금의 급여액은 물가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러한 유족연금은 파생연금(Derived Pension Benefits)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성 관련 연금이다. 즉, 유족연금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여성이 주로 수급하고 있으며, 기대여명이 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연금이다.

34) 기본연금액은 연 44,300크로나(SEK)임. 스웨덴 1크로나(1 SEK)의 환율은 127.6원임(2018. 7. 19일 기준)

35) 추가연금(Premium Pension)에서 제공하는 배우자연금(Spouse's Pension)임

36)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에서 제공하는 배우자연금(Spouse's Pension)임

〈표 IV-2〉 주요국의 여성 유족연금 급여(2006년, 2013년)

(단위: %)

구분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비율		유족연금수급자 중 여성비율	
	2006	2013	2006	2013
벨기에(BE)	39.8	44.8	98.0	96.4
독일(DE)	56.2	55.2	85.7	83.7
덴마크(DK)	56.9	55.2	100.0	58.0
프랑스(FR)	49.6	52.0	91.8	89.2
아일랜드(IE)	n.a.	61.4	n.a.	83.4
이탈리아(IT)	39.0	40.0	87.9	85.9
룩셈부르크(LU)	66.0	66.1	79.8	80.5
네덜란드(NL)	30.8	29.9	99.3	99.1
스웨덴(SE)	57.5	58.2	57.5	58.1
영국(UK)	65.1	63.0	91.7	85.5
전체 <sup>1)</sup>	51.2	52.6	79.17	82.0

주: 1) 전체는 저자가 EU 일부 국가(10개국)를 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6), p. 48

#### 다. 분할연금

캐나다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에서는 1978년 분할연금을 도입하였다. 이혼 시 결혼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는 별거 시에도 적용한다.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여 이혼이 아닌 동거(결혼 또는 사실혼 포함) 시에도 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1998; 권문일 2006 재인용).

스위스는 1997년부터 분할연금을 도입하였는데, 결혼기간 동안 발생한 연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반분한다(Brocas and Zaidman 1998).

독일은 1977년부터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각 취득한 연금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는 형태이다. 2001년 연금 개혁에서는 캐나다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도 합의하면 연금을 분할할 수 있다(ISSA 2016).

영국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수급권에

상당하는 가치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으로 대체하여 받거나(Offsetting), 법관의 명령에 의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Earmarking), 법관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권에 대해 분할비율을 결정(Sharing)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ISSA 2016; 서선영 2017).

〈표 IV-3〉 영국의 다양한 연금분할 방법

구분	이혼 시 연금 취급 방법	특징
Offsetting	재산분할 대상에 연금권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연금권 이외에 연금권에 상당하는 가치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음	- 연금 이외의 자산이 있어 장래 연금이 라는 형태로 받는 것보다 이혼 시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
Earmarking	법관이 연금 관리자에게 배우자의 퇴직 시에 지급될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권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법	- 연금권의 명의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금권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명령은 무효가 됨 - 이혼 후 연금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관계청산(Clean break)이 불가능함
Sharing	법관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권에 대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 관계청산(Clean break)이 가능함 - 독립적 수급권(자기 명의의 연금권)을 얻게 됨

자료: 홍남희(2015); 서선영(2017)을 재인용함

이러한 분할연금은 재산권과 사회보장권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특성을 갖는다(유호선 2010). 분할연금은 분할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성격이 있고,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권의 특성도 있다.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국가는(예: 일본) 합의에 의해 분할수준과 분할기간을 결정하므로 분할의 강제성이 약하나,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에 초점을 둔 국가들은(독일 등) 재산권과 동시에 사회보장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분할연금의 성격은 해당국가의 연금제도 특성, 여성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보장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Tanaka 2007; 유호선 2010 재인용).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시장노동 이외에 가사노동에도 연관시킴으로써 젠더평등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박진화 2015; ISSA 2016; MISSOC 홈페이지).

## 라. 출산 및 육아크레딧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여성 관련 연금수급권으로 출산, 육아, 수발, 돌봄크레딧 등이 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다.

〈표 IV-4〉 선진국의 여성 관련 연금인 크레딧 제도

크레딧 종류	운영 국가
출산크레딧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후생연금) 등
육아(양육)크레딧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후생연금) 등
수발(돌봄)크레딧	독일, 오스트리아 등
장애아동 돌봄크레딧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

자료: 유호선(2016)을 재구성함

유럽의 주요국들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과 아동양육크레딧(혹은 돌봄크레딧)을 확대 강화하여 왔다. 이는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와 동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OECD 2017b).

첫째, 스웨덴의 여성 관련 연금수급권 강화와 관련된 육아(양육)크레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크레딧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한 보상,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자녀양육크레딧의 수급 조건은 친부모 혹은 자녀를 입양한 부모여야 하고, 최소 5년 동안 연금 관련 소득 활동을 하였거나 장애연금(Earnings-related Sickness or Activity Compensation) 수급자여야 한다. 즉,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을 벌었던 적이 있어야 하며, 육아크레딧의 인정 기간은 자녀당 4년이다. 양육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이 약 80%이며 남성은 약 20% 정도로 대부분 여성이 수급한다. 크레딧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세로 부담하고 있다.<sup>37)</sup>

Palme(2000)에 의하면 스웨덴 여성이 양육으로 인해 고용단절이 발생되더라도 양육크레딧에 의해 약 10% 정도 연금수준이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박진화 2015).

37) Palmer, Edward(2000)

둘째, 독일은 여성 관련 연금수급권 강화와 관련하여 양육과 출산(모성휴가)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양육크레딧은 1986년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1992년 법 개정 시 자녀당 1년의 양육크레딧을 3년으로 확대하였다. 양육크레딧의 수급자는 부부 중 실제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한 경우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 여성에게 귀속된다. 이로 인해 1992년 이전에 출산하여 양육한 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6~28유로의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김혜진 2018).

양육크레딧에 적용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나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크레딧 인정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가입소득이 결정되며, 소득 상한이 존재한다. 이때 양육크레딧의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독일은 양육크레딧과 별도로 출산(모성휴가)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적용하는데, 이는 자녀의 출산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발생하며, 지급 대상은 출산 여성이다. 출산크레딧의 인정 기간은 총 14주이며, 쌓등이는 12주를 추가하여 인정해 준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며, 이때 출산크레딧에 적용되는 인정 소득은 자신의 평균 소득점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양육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을 위한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ISSA 2016; MISSOC 홈페이지).

셋째, 프랑스의 육아(양육)크레딧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자녀당 2년 동안 지급하는 아동양육크레딧(MDA: Majoration de Durée d' Assurance pour enfants),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아동양육크레딧(AVPF: Assurance Vieillesse des Parents au Foyer), 3자녀 이상 둔 부모에게 연금급여액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크레딧(MP: Majorations de Pension)이 있다.

아동양육크레딧(MDA)은 여성의 낮은 연금 수준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자녀의 출산 혹은 입양 시 적용되며 1자녀당 인정기간은 2년이다. 아동양육크레딧에서 1년은 여성에게만 수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1년은 부모 중 자녀의 양육에 보다 많

이 기여한 사람이 받는다. 적용소득은 수급자의 생애 평균 소득(최대 소득 25년)을 적용한다. 동 제도 실행을 위한 재원은 보험료 수입으로 마련된다.

추가아동양육크레딧(AVPF)은 세 살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해 낮은 연금 수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자녀가 1명 이상이고 가구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크레딧 인정 소득은 최저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3자녀 이상 둔 부모를 위한 크레딧(MP)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동 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16살까지 최소 9년 동안 양육했을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가산연금액은 2012년 이전에는 5%였으나, 이후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김혜진 2018)

넷째, 영국은 아동 양육크레딧(Credits for caring for children)외에 돌봄크레딧(Credits for Carer's Allowance), 모성 및 입양급여크레딧(Credits for Maternity Allowance, Statutory Adoption Pay) 등 다양한 여성 관련 연금제도가 있다.

아동양육크레딧은 아동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sup>38)</sup> 수급 조건은 첫째, 16세 이상이며 연금 수급연령 이하이고, 둘째,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함에 따른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보모(Approved Foster Carer)이어야 하며, 셋째, 주당 2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근로연령에 있는 조부모도 수급이 가능하다. 동 크레딧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마련된다.

돌봄크레딧(Credits for Carer's Allowance)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소득의 감소 혹은 상실된 기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크레딧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며, 저소득자(세후 소득 기준 주당 £100 미만)여야 한다. 동 크레딧의 재원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된다.

모성 및 입양급여크레딧(Credits for Maternity Allowance, Statutory Adoption Pay)은 자녀의 출산 및 입양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 혹은 감소된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제

38) 새로운 사회적 위기인 돌봄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함께 이러한 돌봄노동을 가정 내 여성의 일로 계속 유지시키려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크레딧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 강화함

도이다. 일반적으로 출산크레딧과 동일하며,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다섯째, 일본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에서 육아휴직기간의 보험료 면제, 보험료 금액 등 여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존재한다.

일본 후생연금에서는 육아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가입자와 사업주 모두 면제)해 주고 있으며, 동 제도의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이전보다 보수가 낮아진 경우 낮아진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보험료 적용은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과거소득(예: 1년 전)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의 보험료 납부부담에 대한 배려로 이를 즉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표 IV-5〉 OECD 국가의 실적 및 육아에 대한 연금크레딧

국가	육아		실업		국가	육아		실업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호주	..	X	..	X	이스라엘	..	-	..	-
오스트리아	X	-	X	-	이탈리아	X	-	X	-
벨기에	X	-	X	-	일본	X	-	X	-
캐나다	X	-	X	-	한국	X	-	..	X
스위스	X	X	X	X	룩셈부르크	X	-	X	-
칠레	X	-	..	-	멕시코	..	X	..	X
체코	X	-	X	-	네덜란드	..	X	..	X
독일	X	-	X	-	노르웨이	X	-	X	-
덴마크	X	-	X	-	뉴질랜드	..	X	..	X
에스토니아	X	-	..	X	폴란드	X	-	X	-
스페인	X	-	X	-	포르투갈	pt	-	X	-
핀란드	X	-	X	-	슬로바키아	X	-	X	-
프랑스	X	-	X	-	슬로베니아	pt	-	X	-
그리스	X	-	X	-	스웨덴	X	-	X	-
헝가리	X	-	X	-	터키	X	-	..	-
아일랜드	X	-	..	X	영국	X	-	..	X
아이슬란드	..	X	X	-	미국	..	X	..	X

주: 1) X : 소득비례연금제도에 명시적 연금크레딧이 존재함  
 2) .. : 소득비례연금제도에 명시적 연금크레딧이 존재하지 않음  
 3) pt: 크레딧이 시간제 근로자에게만 존재  
 4) '묵시적'이란 고용단절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으나 연금규칙 또는 1층의 구성요소들로 인해 동일한 기능이 묵시적으로 수행됨을 말함

자료: OECD Korea Policy Center(2015), p. 95

이를 정리하면, 주요 선진국들은 여성의 노후빈곤 완화와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크레딧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하향 조정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더욱 약화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관련 연금정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 이러한 크레딧의 효과와 관련하여, De Freitas et al.(2011, pp. 440~457)은 관대한 연금 크레딧제도는 EU 국가에서 5년의 경력중단에 의해 발생하는 노후소득감소 효과를 거의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Brugiavini et al.(2012)도 가족정책 혹은 연금정책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손실을 상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였다.<sup>39)</sup>

## 2. 사적연금 부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공적연금 개혁 등으로 성별 연금 격차 및 노후소득 격차의 문제가 확대되었다. 특히, 재정문제에 의한 공적연금 개혁 시 사적연금의 역할강화가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별 연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을 단순히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여성 관련 배려정책들을 포함함으로써 사적연금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선진국이 추진해 온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사례를 살펴본 후 그 특징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가. 배우자를 위한 사적연금 운영

퇴직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Scheme, Workplace Pension Scheme)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사적연금 제

39) OECD Korea Policy Center(2015), p. 93

도이다.<sup>40)</sup>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적용범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문제,<sup>41)</sup> 가족구성의 변화(핵가족화, 여성독신가구 증가 등)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여성의 노후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과 밀접히 관련된다(〈표 IV-6〉 참조).

〈표 IV-6〉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 운영

국가	제도명칭	도입시기	가입대상	기타
미국	Spousal IRA	1976년	저소득 배우자 무직 배우자 동거인	보험료 납입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부여
캐나다	Spousal RRSPs	1974년		
호주	Spouse Contributions	2006년		

### 1) 미국: Kay Bailey Hutchison Spousal IRA

미국의 배우자 개인퇴직계좌제도(Spousal IRA)는 1976년 세제개혁법안(The Tax Reform Act of 1976)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혹은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개인퇴직계좌에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는 제도이다.<sup>42)</sup> 원래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up>43)</sup> 제도는 자영업자, 시간제근로자,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1974년 도입되었으나, 이후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퇴직연금 가입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왔다.<sup>44)</sup>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 7월 세법안(Code section 219(c))에 서명한 이후 동 법안을 발의한 텍사스 상원의원(Senator)의 이름을 인용하여 “기혼자에 대한 특별조항(Special

40) <https://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41) 남녀 간 임금 격차의 존재, 출산-육아문제로 인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남녀 간 고용구조(시간제근로, 비정규직) 차이 등을 말함

42) Investopia(2018. 1. 10), “Making Spousal IRA Contributions”  
(<https://www.investopedia.com/retirement/making-spousal-ira-contributions/>)

43) IRA 제도는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따라 1974년 도입됨

44) 1981년 Economic Recovery Tax Act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음

Rules for Certain Married Individuals)”을 “Kay Bailey Hutchison 배우자 IRA 조항 (Kay Bailey Hutchison Spousal IRA)”<sup>45)</sup>으로 변경하였다.<sup>46)</sup>

배우자 개인퇴직계좌(Spousal IRA)에 가입을 위해서는 ① 혼인상태 유지, ② 부부공동의 세금신고(Joint Income-Tax Return), ③ 개인퇴직계좌에 납부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Compensation or Earned Income) 보유, ④ 가입자와 배우자 퇴직계좌의 계정 분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배우자 개인퇴직계좌(Spousal IRA)는 전통형(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 형태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전통형 IRA의 납입보험료는 소득공제되고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나, Roth IRA의 납입보험료는 소득공제되지 않으나 최소 5년간 계좌 유지 시 인출단계에서 납입보험료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형 IRA에 가입 시 배우자 개인퇴직계좌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간납입한도는 \$5,500가 적용되며, 1998년 이후부터 전통형 IRA의 납입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부부가 합산하여 \$11,000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인 경우 각각 추가기여(Catch-up) \$1,000를 합산하여 \$13,000까지 납입이 가능하다.<sup>47)</sup>

한편, 연간 납입한도는 \$5,500이지만 과세대상소득(Compensation)이 이보다 적다면 과세대상소득이 납입한도가 된다. 이는 과세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V-7〉 미국 개인형 퇴직연금의 기여금 납입한도

(단위: 달러)

구분 \ 연도	1974~ 1976	1977~ 1981	1982~ 1997	1998~ 2001	2002~ 2005	2006~ 2007	2008~ 2012	2013~ 2018
전통형 IRA	1,500	1,500	2,000	2,000	3,000	4,000	5,000	5,500
배우자 IRA	-	250	250	2,000	3,000	4,000	5,000	5,500
추가기여	-	-	-	-	500	1,000	1,000	1,000

주: 추가기여(Catch-up)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DQYDJ(2017)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s://dqydj.com/history-of-contributions-ira-limit/>)

45) U.S. Code §219-Retirement savings (c) Kay Bailey Hutchison Spousal IRA

46) Collin W. Fritz and Associates, Inc.(2013)

47) Internal Revenue Service(2018)

실제적인 세제혜택은 납부액의 소득공제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표 I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조정총소득(Modified AGI)<sup>48)</sup>과 신고방식(Filing Status)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즉, 독신이거나 세대주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조정총소득 \$62,000 이하인 경우 납입액 전액에 대해, \$62,000~\$72,000인 경우 납입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받으나 \$72,000 이상인 경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부부합산신고 또는 유자격미망인인 가입자는 독신이거나 세대주에 비해 기준소득이 다소 높다. 그러나 부부 별도 신고할 경우 기준소득이 낮고 소득공제 수준이 적다.

<표 IV-8> 전통형 IRA의 소득공제 한도(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상태	신고방식(납세자 구분)	조정총소득 (Modified AGI)	소득공제
가입	독신 또는 세대주	~\$62,000	전액
		\$62,000~\$72,000	일부
		\$72,000~	불가
	부부합산신고 또는 유자격미망인	~\$99,000	전액
		\$99,000~\$119,000	일부
		\$119,000~	불가
	부부별도신고	~\$10,000	일부
		\$10,000~	불가
	미가입	독신, 세대주, 유자격미망인	관계 없음
부부합산신고 또는 별도신고 (배우자: 퇴직연금 미가입)		관계 없음	전액
부부합산신고 (배우자: 퇴직연금가입)		~\$186,000	전액
		\$186,000~\$196,000	일부
		\$196,000~	불가
부부별도신고 (배우자: 퇴직연금가입)		~\$10,000	일부
	\$10,000~	불가	

자료: Internal Revenue Service(2018)

48) 총조정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 총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총소득: 임금,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 사회보장혜택 등임

\*\*공제항목: IRA 기여금, 학자금대출 이자비용, 의료저축납입금 등임

## 2) 캐나다: Spousal RRSP

캐나다<sup>49)</sup>의 정부인증퇴직저축(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은 노후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도입한 개인연금제도이다. 동 제도는 71세 이하자로서 소득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투자수익에 대해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을 해준 후, 계좌 해지 및 인출 시 과세한다. 다만, 71세 이상이 되면 적립금을 인출해야 한다. 동 제도는 계좌 소유자에 따라 개인 RRSP(Individual RRSP), 배우자 RRSP(Spousal RRSP), 단체 RRSP(Group RRSP)로 구분된다.<sup>50)</sup>

〈그림 IV-1〉 캐나다 공·사적 연금제도 체계

Pillar 1	Pillar 2	Pillar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ld Age Security (OAS)</li> <li>-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nada Pension Plan (CPP)</li> <li>- Quebec Pension Plan (QP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istered Pension Plans(RPPs)</li> <li>-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RRSPs)</li> <li>-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PRPPs)</li> <li>- Tax Free Savings Accounts<sup>51)</sup> (TFSA)</li> </ul>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5)

RRSP의 한 형태인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Spousal RRSP)'은 RRSP의 가입자가 본인이 최대한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다. 배우자 RRSP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적 배우자(Spouse)

49) 캐나다의 연금제도는 1층의 노령연금(OAS: Old Age Security), 2층의 소득비례연금제도인 캐나다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3층의 고용주 제공 퇴직연금(RPP: Registered Pension Plans) 및 개인연금(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등으로 구성됨. OAS는 캐나다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자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제도이며, CPP는 소득에 비례한 납입액에 기초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공적연금임. 퀘벡주는 CPP와 유사한 퀘벡연금(QPP: Quebec Pension Plan)을 독립적으로 운영함

50) <https://www.getsmarteraboutmoney.ca/plan-manage/retirement-planning/rrsp/3-types-of-rsrps/>

51) 2009년 도입된 비과세저축(TFSA: Tax-Free Savings Account)은 특정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만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외에 12개월 동안 함께 살아온 동거인(Common-Law Partner)도 포함된다.<sup>52)</sup>

또한 보험료 납부자가 71세가 넘더라도 그 배우자(Spousal RRSP 가입자)의 나이가 71세 이하이면 배우자 RRSP 계좌는 유지될 수 있다. 배우자 RRSP의 경우 부부 간 소득격차가 크거나 은퇴 준비금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sup>53)</sup>

〈그림 IV-2〉 캐나다의 주요 사적연금

Reasons to contribute to an <b>RRSP</b>	Reasons to contribute to a <b>TFSA</b>	Reasons to contribute to a <b>Spousal RRSP</b>
<p><b>You are a high income earner</b> and expect to be in a lower tax bracket in retirement</p> <p><b>You can borrow from your RRSP</b></p> <p><b>For education:</b> You can withdraw up to *20,000 from your RRSP – *10,000 in each calendar year as long as 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s enrolled in a designated education program defined by the government.</p> <p><b>For buying your first home:</b> Up to *25,000 can be withdrawn from an RRSP under the Home Buyers' Plan, without affecting your future contribution room.</p>	<p><b>Your income is under \$35,000</b></p> <p>You expect to be in a higher income tax bracket in retirement</p> <p>You have shorter-term savings goals – Think saving for a <b>home, wedding, car or vacation</b></p> <p>You want easier access to your savings</p>	<p><b>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b> in the amount that you and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earn</p> <p>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do not work, or have plans to leave work for personal or professional reasons – for instance, <b>staying at home with children or going back to school</b></p> <p>You and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want to take advantage of <b>income splitting</b>. During retirement, both of you will then have approximately the same reduced income taxes owing to the government.</p>

자료: <http://next.cdspi.com/articles/rrsp-tfsa-or-spousal-rrsp/>

배우자 RRS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 금액(Taxable Income)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며, 동 납입 금액을 통해 배우자가 71세 이후 연금수급권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하면, 배우자 RRSP에 가입한 후 3년이 경과해서 인출한 경우에만 해당 인출액을 배우자의 과세소득으로 보며,

52) 두 사람 간 친자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또는 동거인의 자녀를 부양하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거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동거인으로 인정함. 두 사람간 파격으로 90일 이상 별거하면 동거인의 자격은 상실됨(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contributing-a-rrsp-prpp/contributing-your-spouse-s-common-law-partner-s-rrsps.html>))

53) 은퇴 이후 고세율 납세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될 배우자 명의의 RRSP 계좌에 가능한 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세제혜택 규모가 커짐. 이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은퇴 후 부부의 수입 수준을 유사하게 만들어 절세혜택이 크게 나타남

3년 이내 인출할 경우 보험료 납입자 본인의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sup>54)</sup>

RRSP 납입한도액은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sup>55)</sup>의 18%와 국세청에서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sup>56)</sup> 당해년도의 최대 납입한도에 미달한 금액(Unused Contributions)은 차년도로 무기한 이월(Carry-Forward Indefinitely)하는 것이 가능하다.<sup>57)</sup> 반면, 퇴직연금(RPP: Registered Pension Plan)에 적립액이 있는 경우 RRSP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 납입한도액은 1957년 '\$2,500와 급여의 1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한 이후 2018년 기준 '급여의 18%<sup>58)</sup>와 \$26,230 중 작은 금액'으로 매년 금액을 상향 조정해오고 있다.

〈표 IV-9〉 캐나다 개인연금(RRSP)의 최대납입 한도액

(단위: CAD)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납입한도액	22,450	22,970	23,820	24,270	24,930	25,370	26,010	26,230

자료: Royal Bank(<https://www.rbcroyalbank.com>)

한편, RRSP 가입자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만기(만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전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고 있다.<sup>59)</sup>

54) 이를 3년 귀속규칙(3-year Attribution Rule)이라 함

55) 소득(Earned Income)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나 이자수입, 배당금, 양도소득, 실업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단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RRSP: Registered Retirement Pension Pla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의 납부액(Pension Adjustment: 회사와 본인이 납부한 총액)은 공제됨

56) 세금 보고 시 그 결과를 알려주는 Notice of Assessment(NOА)에서 본인의 납입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음

5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contributing-a-rrsp-prpp/what-unused-rrsp-prpp-contributions.html>

58) 급여의 18%로 조정된 시기는 1991년으로,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1년 근무기간에 대해 2%의 연금액을 맞추기 위해 1980년 중반 65세 퇴직자에 대한 연금률(Annuity Rate) 9%를 곱하여 소득의 18%로 정함. 연금률이란 1년 급여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적립해야 할 소득비율로, 근무기간 1년당 급여 2%를 65세부터 지급하는 DB형 제도와 18%를 적립하는 DC형 제도가 동일하다고 봄(홍순구 2012)

59) Government of Canada, Tax Rates on Withdrawal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making-withdrawals/tax-rates-on-withdrawals.html>)

〈표 IV-10〉 캐나다 개인연금(RRSP)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세율(2018년)

인출금액	\$0~\$5,000	\$5,001~\$15,000	\$15,000 이상
세율	10%(퀘벡: 20%)	20%(퀘벡: 25%)	30%(퀘벡: 30%)

자료: Income Tax Regulations s. 103(4)(<https://www.taxtips.ca/rrsp/withholdingtax.htm>);  
<https://www.rbcroyalbank.com/investments/rrsp-rules-contribution-limits.html>

### 3) 호주: Spouse Super Contribution Tax Offset

호주에서도 여성의 노후소득 제고를 위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인 경우 소득자(주로 남성)가 배우자(주로 여성)를 위해 배우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RSA: Retirement Saving Account) 또는 퇴직연금기금(Super Fund)<sup>60)</sup>에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세액공제 방식 적용)을 부여하고 있다.<sup>61)</sup> 이때 납부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공되며, 세액공제액(Tax-Offset)은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40달러(=\$3,000×18%)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sup>62)</sup> 한편, 배우자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배우자와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야 한다. 셋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호주에 거주해야 한다. 넷째, 배우자 연령이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 연령이 65~69세인 경우 근로가능(Work Test)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배우자 연간 소득은 \$37,000 미만이면 납부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7,000~\$40,000의 연간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차등화하고 있

60) 은퇴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는 은행,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보험회사(Life Insurance Company)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계좌(Superannuation Account)를 의미함.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은 신탁형인 반면, 은퇴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는 계약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http://www.treasury.wa.gov.au/Treasury/Superannuation/Super\\_and\\_Retirement\\_Savings\\_Accounts/](http://www.treasury.wa.gov.au/Treasury/Superannuation/Super_and_Retirement_Savings_Accounts/))

61)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Offsets-and-rebates/>

62)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offsets-and-rebates/super-related-tax-offsets/?anchor=taxoffset#Taxoffsetforsupercontributionsonbehalf>

다. 한편, 정부재정 문제로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연령요건은 축소되었다. 즉, 2011년 7월 1일부터 40세 미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Spouse Tax Offset)을 부여하지 않는다.

〈표 IV-11〉 호주의 배우자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2018년 기준)

(단위: 호주 \$)

구분	배우자 소득 수준			
	\$37,000	\$38,000	\$39,000	\$40,000 초과
세액공제대상 최대금액 <sup>1)</sup>	\$3,000	\$2,000	\$1,000	-
세액공제액(납입액×18%)	\$540	\$360	\$180	-

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7,000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대상 최대금액은 \$3,000이고, 연간 소득이 \$37,000을 초과할 경우 \$3,000와 초과액(예: 배우자 연간소득이 \$38,000인 경우 초과액은 \$1,000)의 차액이 세액공제 대상 최대금액이 됨

자료: GESB(2017)

#### 4) 일본: 전업주부까지 퇴직연금 가입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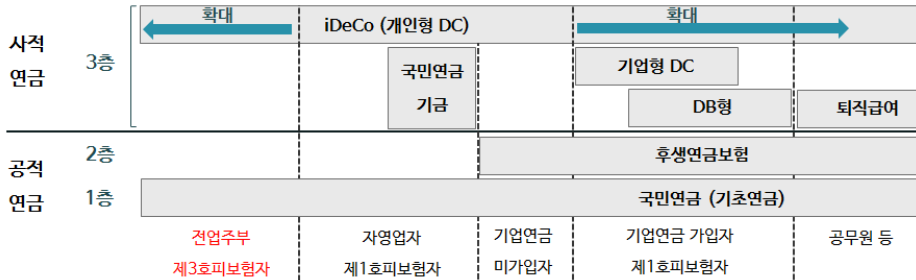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자영업자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년 10월 개인형 확정기여(DC)연금제도(個人型確定拠出年金, iDeCo: 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를 도입하였다.<sup>63)</sup> 일본의 개인형 DC 제도의 경우 도입 당시 자영업자 또는 후생연금 등 기업연금(퇴직연금) 미가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결혼(結婚) → 퇴직(退職) → 전업주부(専業主婦) → 재취업(再就職)’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sup>64)</sup> 2016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는 전업주부(専業主婦(夫)), 공무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등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개인형 DC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sup>65)</sup>

63) 厚生労働省(<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kyoshutsu/ideco.html>)

64) <https://media.rakuten-sec.net/articles/-/6829>

65) 佐川 あぐり(2017. 10. 5)

〈그림 IV-3〉 일본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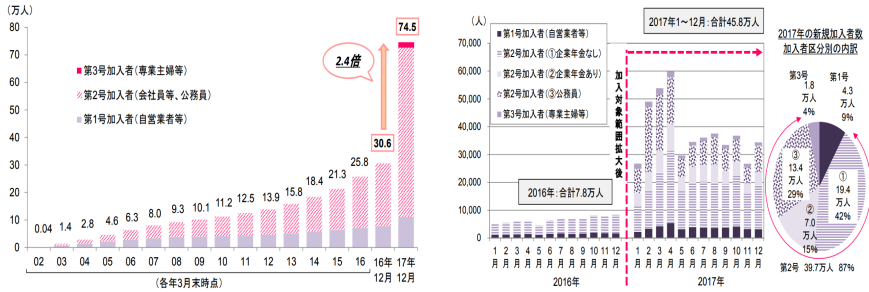
자료: 大和総研(2017. 10. 5)

일본의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자는 2017년 12월 말 기준 74.5만 명으로 2016년 12월(30.6만 명)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률(가입대상자 대비 가입자 수)은 2016년 0.7%에서 2017년 1.1%로 증가하였다. 2016년 6월 말 기준 개인형 DC연금의 총가입자 수는 269,828명으로 이 중 제1호 가입자는 72,007명, 제2호 가입자는 197,821명이다.<sup>66)</sup> 한편, 신규가입자 수는 2017년 기준 45.8만 명으로, 가입대상 확대 이후 약 6배 정도<sup>67)</sup> 늘어났다. 신규가입자 중 제1호 가입자(자영업자 등)는 4.3만 명, 제2호 가입자(근로자 및 공무원)는 39.7만 명, 제3호 가입자(전업주부 등)는 1.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6) 기업형 DC연금(企業型確定拠出年金) 가입자 수는 2016년 6월 말 약 5,789,000명임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kyoshutsu/kiyakusu.html>)

67) 2016년 신규가입자: 월평균 6,500명, 총 7만 8천 명

〈그림 IV-4〉 일본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수 (단위: 건)      신규가입자 수 (단위: 건, %)



자료: 佐川 あぐり(2018. 3. 5): 기업연금연합회(企業年金連合会, Pension Fund Association)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와는 달리 일본의 배우자(부인) 명의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 납입액에 대해 남편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sup>68)</sup> 다만 적립금 운용으로 얻은 이자와 배당금 등은 전액 비과세 되고, 급여 수령 단계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된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sup>69)</sup> 이런 의미에서 수급권 제공 자체가 노후보장 강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 이 같은 세제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60세까지는 도중에 해약하고 인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표 IV-12〉 일본 개인형 퇴직연금(iDeCo)의 납입한도액

(단위: 만 엔)

구분	자영업자	전업주부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연금가입자 (공무원, 사학연금)
월액	6.8	2.3	2.3	2.0 (1.2)
연액	81.6	27.6	27.6	24.0 (14.4)

주: 기업형 DC, DB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企業年金)연금 가입자 중 기업형 DC에만 가입하고 있는 자의 납입 한도액임. 괄호 안의 금액은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 '기업형 DC에만 가입하고 자'를 제외한 자(공무원·사학 공제 가입자도 포함)의 납입한도액임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68)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은 공적연금과 달리 사회보험료 공제가 아닌 소규모 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로 처리되기 때문임(<https://hoken-connect.jp/columns/215/>)

69) <http://www.jis-t.kojingata-portal.com/about/merit.html>

## 나. 사적연금의 분할연금제 도입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규정이 없다. 다만 개인연금은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미국 등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분할연금제도를 사적연금제도에 명시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이며, 여기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중심으로 사적연금 분할제도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은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에서, 독일은 연금제도의 이념적 측면을 중시하는 분할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REA 제정에 의한 퇴직연금 분할 허용(미국)<sup>70)</sup>

미국 ERISA법(제105조)은 퇴직연금에 대한 양도금지규정을 두고 있어 이혼 시 사적 퇴직연금제도의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미국연방의회는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tirement Equity Act of 1984, REA)을 제정했다. 즉 연방의회는 REA를 제정하여 혼인관계를 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동반자관계에서 발생한 퇴직연금은 가입자 및 배우자의 공동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형태(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가입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배우자도 급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주법원 등의 가사 관계명령이 연방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가) 급여형태의 선택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에 의하여 개정된 ERISA법에 의하면 기혼 근로자에

70) 박지원(2014)을 참고하여 정리함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서 유족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sup>71)</sup> 이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은퇴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는 적격유족연금(Qualified Preretirement Survivor Annuity)을 종신수급하게 된다. ② 근로자가 은퇴연령까지 생존한 경우 그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부연생연금(QJSA: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y)이 된다(ERISA 법 제205조 (a) 참조). 이 경우 은퇴 후에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최소한 근로자 생존 시 지급되던 퇴직연금의 50%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sup>72)</sup> 이러한 유족연금은 근로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이러한 포기는 실제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단독으로 퇴직연금의 지급형태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결정할 수 없다.

#### 나) 적격 가사관계명령

주법원 등이 발령한 가사관계명령이 근로자퇴직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적격가사관계명령(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이 되면 ERISA법의 연금수급권 양도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퇴직연금의 분할이 가능하다. 가사관계명령이란 주(州) 가족법에 의해 내려진 판결, 결정 또는 명령으로서 배우자, 전(前)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가입자의 피부양인에게 자녀양육비, 배우자부양료, 부부공동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관계명령이 적격가사관계명령(QDRD)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사관계명령에는 ① 가입자 및 전 배우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급여의 분할금액 또는 분할비율, ③ 급여의 지급횟수 또는 지급기간, ④ 퇴직연금제도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사관계명령에는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① 본래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② 가사관계명령이 없는 경우에 지급했을 금액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③ 이전의 적격가사관계명령 때문에 다른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를 현재 가사관

71) 미국 ERISA법 제205조에 의한 연생 및 유족연금 적용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DB), IRP 등이 있음

72) ERISA법 제206조(급부의 형태 및 지급에 관한 기타규정) (d) (5) (B)를 참조함

계명령상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퇴직평등법이 적격가사관계명령을 규정하게 된 이유는 각 주법원이 ERISA법의 연금수급권 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이혼 시 부부간에 퇴직연금을 원활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 가족법 적용에 의한 사적연금 분할(캐나다)

캐나다는 1978년 공적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에 대해 혼인기간 중 연금 크레딧<sup>73)</sup>을 분할하는 방식(Credit Splitting, Division of Pensionable Earnings)을 도입하였다. 동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이혼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 상황에 놓일 여성에게 연금혜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sup>74)</sup>

한편, 일반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법령상 별도의 규정 없이 가족법(Family Law Act)상의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sup>75)</sup> 다만 구체적인 평가방식에 관하여는 가족법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연금을 평가하여 분할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금의 종류 및 분할분의 규모, 산정기간, 지급시기,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 가) 사적연금자산 평가 방법

이혼시점가치산출방식(Termination Method)은 연금수급권 있는 배우자가 이혼시점에 근로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한다는 가정하에 연금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임에 반해, 퇴직시점가치산출방식(Retirement Method)은 연금수급권이 있는 배우자가 은퇴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은퇴하였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퇴직시점가치산출방식(Retirement Method)하에서는 이혼 후 연금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73) 보험료부과대상소득, 보험료 납부내역

74) Michael G. Cochrane(2012), p. 88

75) Ontario, Family Law Act 제4.1조

## 나) 분할수준

연금분할 시 50%씩 균등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혼인기간 중 납입기간의 월 수)/(기납입 또는 향후 납입기간의 월 수)'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연금을 분할한다. 예를 들어 A와 B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이고, A가 15년간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금의 100%가 연금분할 대상이 되어 연금의 1/2씩 분할된다. 그러나 만약 A가 15년간 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2/3 (=10/15)$ 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금분할 대상기간이 된다. 따라서 B는 A의 연금의  $1/3 (=2/3 \times 1/2)$ 에 대해 권리가 발생한다.

## 3) 이혼 시 분할명령에 의한 사적연금 분할(영국)

영국의 사적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영국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법원은 오프세팅(Offsetting) 방식에 기초하여 연금에 상응하는 재산을 추가적으로 분할해 주거나 연금분할명령(Pension Sharing Order)을 발령하여 전(前) 배우자로 하여금 연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할 수 있다.

연금분할명령(Pension Sharing Order)은 1999년 복지개혁 및 연금에 관한 법률(Welfare Reform and Pension Act)에 의해 도입되어 200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금분할명령은 이혼 시에 당사자 간에 연금수급권을 분할하여 가입자로부터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는 현금 등가양도가치(Cash Equivalent Transfer Value)의 비율로서 표시된다. 다만 국민연금과 사망 시에 지불되는 일정한 일시금(Any lump sum payable on death)의 경우에는 수급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연금분할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금분할명령은 이혼확정판결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며, 동 명령에 의해 전(前)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즉 연금분할명령이 발령되면 수혜자(가입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분에 대해 현재의 연금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다른 연금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

#### 4) 연금제도의 이념 실현으로서 사적연금 분할(독일)

독일의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두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여성의 노후소득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분할연금은 2009년 일부가 개정되어 확대되고 있다.

독일 분할연금은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금의 고유한 목적은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 시 본인과 가족, 특히 부부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혼인의 지속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가시적인 재산뿐 아니라 아직 발현되지 않은 공적연금 수급권까지 균등하게 분할한다는 독일민법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분할연금에는 사회보장권과 재산권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금에 대한 분할은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수자영업연금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2층과 3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제도화되어 수행되고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분할은 이혼 당시의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고, 이 가운데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연금분할의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실제적인 분할은 향후 연금의 지급개시 시점에서 발생된다. 만약 연금분할의 의무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상대방 청구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는 사망당시 가입하고 있던 연금제도에서 지게 된다. 연금분할 청구권은 최소혼인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으나, 분할금액이 적을 경우 관할 법원은 청구권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혼 당시 부부가 별도의 보상방식에 합의를 하는 경우 연금분할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이정우 2003).

#### 다. 사적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성(부인)의 기대수명이 남성(남편)보다 높아 남편사망 이후 부인의 노후보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사적연금에서 형성된 유족연금 급여액에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였다.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부인(또는 자녀)이 유족연금 대상자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족연금에 대한 세제 개편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연금가입자(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상속인(유족)이 연금계좌를 승계하여 수령할 경우 상속세가 적용되므로<sup>76)</sup> 영국 등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유족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 연령, 상속받는 연금의 수급방식(일시금, 연금, 부분인출) 등에 따라 상속받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77)</sup> 특히, 영국의 퇴직연금 유족연금 과세방식에 있어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연금개혁 과정(Pension Freedom)<sup>78)</sup>에서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급여수령 방식과는 관계없이 연금 상속분(Death Benefits)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sup>79)</sup>

영국의 경우 2015년 4월 이전에는 연금수령자 사망 시 해당 연금 상속분(Death Benefits)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5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연금개혁 과정을 거치며 2015년 4월 6일 이후부터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 대해 급여수령 형태(일시금 또는 부분인출)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sup>80)</sup> 한편, 연금수급자가 75세 이후에 사망하고 일시금으로 상속받는 경우 과거 55%

76)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를 참조함

77) Prudential(2017)

78) 영국은 2015년 4월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수령 의무화를 폐지함

79) Telegraph(2014. 9. 29), "Pension death tax - your questions answered"; Citywire(2014. 9. 29), "Government to abolish 55% pensions death tax; AEGON Homepage" (<https://www.aegon.co.uk/workplace/members/coming-up-to-retirement/tax-on-your-pension-benefits.html>)

80) <https://www.gov.uk/guidance/pension-administrators-lump-sum-death-benefit-payments>; <https://www.gov.uk/tax-on-pension-death-benefits>

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2015년 4월부터는 45%(2016년 이후부터는 소득세율<sup>81)</sup>을 적용)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속인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다.

〈표 IV-13〉 영국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세제체계

구분	연금개혁 전(2015년 4월 이전)		연금개혁 후(2015년 4월 이전)	
	75세 이전 사망	75세 이후 사망	75세 이전 사망	75세 이후 사망
일시금	55%* *급여 미지급 상태인 경우 비과세	55%	비과세	45%(2015년) 소득세(2016년~)
부분인출	소득세 (한계세율 적용)			소득세 (한계세율 적용)

자료: Practitioner(2014); HM Revenue & Customs(2018)

한편, 호주는 세법상 유족에 해당되는 경우 일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은 유족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급여인출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잔여 적립금을 수령하는 유족 연금에 대한 과세는 세법상 유족인정 여부, 유족 및 사망자 연령, 유족의 급여수령 형태에 따라 다르다. 세법상 유족이 아닌 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18세 이상 자녀와 경제적으로 독립한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81) 영국은 2018년 기준 소득세 면제금액(Standard Personal Allowance)을 £11,850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고 있음(<https://www.gov.uk/income-tax-rates>)

- ① Personal Allowance(~£11,850): 0%
- ② Basic Rate(£11,851~£46,350): 20%
- ③ Higher Rate(£46,351~£150,000): 40%
- ④ Additional Rate(£150,000~): 45%

〈표 IV-14〉 호주 연금법과 세법상 유족인정 여부

구분	유족인정 여부	
	연금법상	세법상
배우자	인정	인정
이전 배우자	불인정	인정
18세 미만 자녀	인정	인정
경제적으로 독립한 18세 이상 자녀	인정	불인정
사망시점에 경제적으로 부양받는 자	인정	인정
배우자 및 자녀 이외에 사망시점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	불인정	불인정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연금선택 시 사망자 또는 세법상 유족의 연령, 그리고 연금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유족 또는 사망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과세부분 중 미과세된 요소(Untaxed Element)를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표 IV-15〉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시 세제적용

구분	급여원천	세제적용
사망자 또는 유족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부분	비과세
	과세부분-taxed element	비과세
	과세부분-untaxed element	한계세율-10% 세액공제
사망자 또는 유족 모두 60세 미만인 경우	비과세부분	비과세
	과세부분-taxed element	한계세율-15% 세액공제
	과세부분-untaxed element	한계세율 적용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유족일시금 선택 시에는 세법상 유족의 인정 여부 및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세법상 유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표 IV-16〉 퇴직연금의 유족일시금 선택 시 세제적용

구분	세법상 유족	세법상 유족이 아닌 자
비과세부분	비과세	비과세
과세부분 -Taxed Element	비과세	15%(의료세 포함)
과세부분 -Untaxed Element	비과세	30%(의료세 포함)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 라. 출산지원금 및 추가지원

칠레는 1981년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연금관리회사(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가 운영하는 적립방식의 개인저축계좌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연금제도 민영화 이후 연금제도 적용범위,<sup>82)</sup> 급여의 적정성, 성별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연금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① 출산크레딧(Bonus for every live birth, Voucher for Children), ② 이혼 시 연금 분할, ③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남·여 계약의 분리, ④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자녀출생 또는 입양 시 정부에서 여성의 연금계좌에 추가금액(Bonus)을 납입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자녀출산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기여금(Bonus) 규모는 “최저임금 18개월분 +  $\alpha$ ”이다. 여기에서,  $\alpha$ 는 자녀출생시점에서 연금수급시점(65세) 기간 동안의 연금 평균수익률을 의미한다.

82)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여성들이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표 IV-17〉 2008년 칠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목표	개혁방안	주요 내용
성 형평성 제고 (Gender Equity)	출산지원금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자녀 수에 따라 18개월의 가입 기간 인정
	이혼 시 연금분할	혼인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이전 배우자가 연금액의 50% 지급
	남녀 간 형평성 제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남·여 계약 분리
적용범위 및 적절성	여성에 대한 추가적 지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보험료 조정 후 차액을 지원

자료: Rafael Rofman, Eduardo Fajnzylber, German Herrera(2008)를 재구성함

둘째, 2008년 연금개혁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남성의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대해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sup>83)</sup>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제도하에서 남성과 여성의 계약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셋째, 이혼 시 혼인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배우자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여성의 적용범위 및 보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해당 재원은 장애 및 유족연금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계약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면서, 위험도가 높은 집단(남성)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위험도가 낮은 집단(여성)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개인의 연금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84)</sup>

83)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일찍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확률이 낮고, 부인을 잃은 남편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이 어려웠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James, Edwards and Iglesias 2010)

84) Rafael Rofman, Eduardo Fajnzylber, German Herrera(2008); Kritzer(2008); James, E., Edwards, A.C., and Iglesias, A.(2010)

###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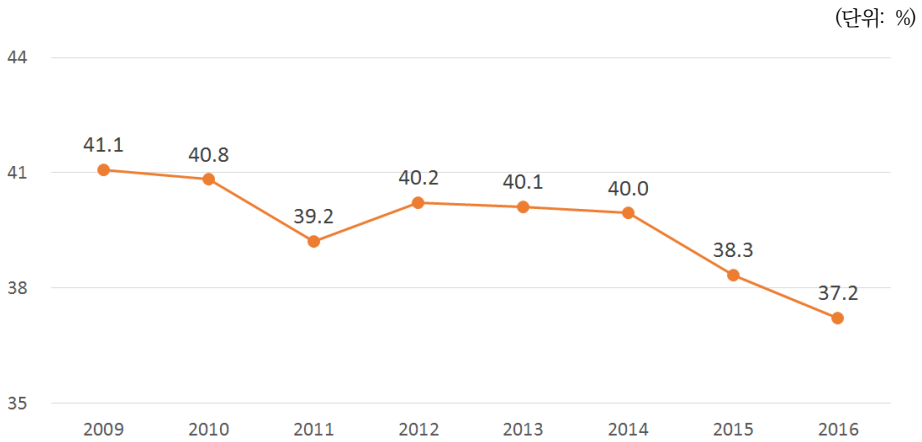
#### 가. 공적연금

##### 1)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지난 10년 동안 성별 연금 격차를 분석한 연구들 중에는 성별 연금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sup>85)</sup>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은 성별 격차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선진국의 다양한 연금정책은 65~79세의 여성 연금수급자의 연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EC(2018)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41.1%에서 2016년 37.2%로 약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여성 연금수급자(65~79세)의 연금 격차(EU 28개국)



자료: EC(2018), p. 70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여성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별연

85) 지난 10년 동안 영국의 직역연금소득(Occupational Pension Income)의 성별 격차를 살펴 보면, 여성은 주당 £58에서 £81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주당 £83에서 £125로 증가함 (<https://www.moneymarketing.co.uk/pensions-gender-gap-widens-past-decade/>)

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적 연금은 고령화, 노동시장 등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고려한 연금 개혁과정에서 공적연금 급여의 축소는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연금수준도 감소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공적연금에서는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 2) 민영화 유도 및 사적연금의 공공성 강화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적연금 운영과정에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이 추진되었으며, 대표적인 개혁방식 중 하나는 공적연금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추진된 연금의 민영화는 성별 연금수급권 격차를 확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1981년 칠레의 연금 민영화 개혁 이후 저소득층, 여성 등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어 2008년 연금개혁에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입양자녀 포함)의 수에 따라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도입하였다. 출산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은 개인별 연금(2층)<sup>86</sup> 계정에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초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다(Kritzer 2008; 최옥금 2014).

한편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민영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이는 전략(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들이 시도되었다.

86) 임금근로자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피용자는 개인별 연금계정에 강제 가입되었으나, 자영자는 소득파악·관리 등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때 개인별 연금계정이 강제 저축 성격을 띠게 되면서 사용자 부담은 폐지되었고, 피용자는 노령연금 보험료로 임금의 10%, 장애 및 유족연금 보험료로 3%를 납부하였음. 한편 개인별 연금계정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었는데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였으며 급여수준은 납부한 보험료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짐(최옥금 2014)

### 3) 성별 연금 격차 완화를 위한 파생적 연금수급권 보장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활률, 출산/육아 등 근로여건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파생 연금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소득활동 기간이 짧고 기대여명은 길기 때문에 자녀양육 등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제도적 배려가 없이 기여와 급여를 연계하는 연금개혁은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석재은 외 2016; EC 2011).

따라서, 성별 연금 격차의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는 파생 연금과 같은 여성과 관련된 연금정책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성에 따른 연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연금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Ginn, 2003; 권문일 2006 재인용). 즉, 남성 중심적 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개별적 연금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앞에서 살펴본 출산 및 육아크레딧과 배우자 간 연금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사적연금

해외 주요국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사례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 사적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취업하지 않은 배우자(특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배우자 특화형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둘째,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업주부 등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여 사적연금의 가입 선택폭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급부 시 연금소득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에서는 전업주부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여성의 사적연금 가입 선택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미국, 캐나다 등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을 사적연금제도까지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에서만 분할연금제도가 있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유족연금에 비과세를 적용하여 유족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호주 등은 일정한 연령 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노후소득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독거 노인여성이 급속히 증가할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칠레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고 해당 금액은 6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부문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후소득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V. 여성 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

여기서는 해외의 사적연금정책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나타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람직한 여성 관련 연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적연금정책 효과

해외에는 매우 다양한 사적연금정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도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다르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납부시점의 연금정책으로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의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조건(예: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수준 등)만 고려한다면 동 정책의 도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가. 분석자료, 기초통계, 기본가정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의 기여분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배우자 IRA나 캐나다의 배우자 RRSP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분이 소득공제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분

을 납성 배우자의 납부보험료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여기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연금세제에서 기여분은 2014년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적용될 세액공제 형태는 납세 가구만 대상으로 한 경우와 면세 가구도 포함한 경우(환급형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매년 산출하는 국세통계연보이며, 동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기준의 소득계층별 급여 및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급여소득자 현황을 보면, 결정세액이 있는 자(납세자)는 전체 급여소득자의 56.4%에 그쳐 면세자(43.6%)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면세자도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는 납세자와 면세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납세자의 총급여구간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인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비를 보면, 15.6%, 21.3%, 27.0%, 23.2%, 12.9%였으며, 3~5천만 원 구간에서 총급여소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나타냈다. 결정세액 없는 자(면세자)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에서 각각 75.8%, 13.1%, 10.2%로 나타나 급여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자가 많았다. 심지어 급여소득이 8천 만 원을 초과하면서도 면세자가 되는 규모도 약 2천 7백 명이며, 고급여형 면세자<sup>87)</sup>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체 급여소득자의 총급여구간별 구성비는 위와 동일 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각각 41.9%, 17.7%, 19.6%, 13.5%, 7.3%였으며, 특히 2천만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 중 91.7%(210만 1천 명 / 229만 2천 명)가 결정세액이 있는 가입자(납세가입자)였으며, 일부(8.3%)는 결정세액이 없는 가입자(면세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7)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는데, 총급여가 많더라도 인적급여, 의료비, 장애인 여부 등으로 과세표준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음

〈표 V-1〉 총급여 구간별 연금저축 가입 및 급여소득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급여 소득 자 (A)	결정세액 있는 자 (납세자)	1,559 (15.6)	2,133 (21.3)	2,695 (27.0)	2,321 (23.2)	1,291 (12.9)	9,998 (100.0)
	결정세액 없는 자 (면세자)	5,871 (75.8)	1,012 (13.1)	787 (10.2)	70 (0.9)	2.7 (0.0)	7,742 (100.0)
	계	7,430 (41.9)	3,145 (17.7)	3,481 (19.6)	2,391 (13.5)	1,293 (7.3)	17,740 (100.0)
연금 저축 가입 자 (B)	결정세액 있는 자 (납세가입자)	1.7 (0.1) <0.1>	33 (1.6) <1.5>	367 (17.5) <13.6>	910 (43.3) <39.2>	789 (37.6) <61.1>	2,101 (100.0) <21.0>
	결정세액 없는 자 (면세가입자)	23 (12.3) <0.4>	82 (42.8) <8.1>	72 (37.5) <9.1>	14 (7.2) <19.8>	0.5 (0.2) <17.8>	191 (100.0) <2.5>
	계	25 (1.1) <0.3>	114 (5.0) <3.6>	439 (19.1) <12.6>	924 (40.3) <38.7>	789 (34.4) <61.0>	2,292 (100.0) <12.9>

주: 1)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2) <> 안은 '급여소득자 대비 연금저축가입자 비율'로 산출된 가입률(B/A×100)임  
 자료: 국세청(2017)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납세가입자를 위와 동일 구간으로 구분한 총급여구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각각 0.1%, 1.6%, 17.5%, 43.3%, 37.6%로 나타났으며, 이 중 5~8천만 원 소득구간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률은 8천만 원 초과 구간에서 61.1%로 가장 높았다. 한편, 면세가입자를 총급여구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비를 보면 12.3%, 42.8%, 37.5%, 7.2%, 0.2%로 나타나 2~3천만 원 구간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률(급여소득자 대비 연금저축가입자의 비율)은 5~8천만 원 구간에서 19.8%로 가장 높았다. 납세가입자와 면세가입자를 합한 전체 가입자의 총급여구간별 구성비는 각각 1.1%, 5.0%, 19.1%, 40.3%, 34.4%로 나타나 5~8천만 원 구간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가입률은 8천만 원 초과 구간에서 61.0%로 가장 높았다.

정리하면, 면세자(연금저축을 통해 면세자가 된 경우 포함)도 2.5% 정도 절세나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만 원 이상

급여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9%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상당 수는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면세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5~8천만 원과 8천만 원 초과 급여소득자이면서 면세자(고급여형 면세자)인 경우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각각 19.8%, 17.8%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면세자는 실질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일 것이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이기는 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면세자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액이 없는 면세가구는 현행 제도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납세여부에 관계없이 가입금액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가 이들 집단의 가입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원석 2017).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납세 여부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납세 및 면세 가입자 중 남성의 비중이 각각 72.2%, 45.8%로 나타나 전체의 70.0%가 남성이며, 여성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납부액 및 세액공제 규모도 가입자 수의 성별 비중과 유사하였다.

〈표 V-2〉 납세 여부별 성별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십억 원, %)

구분		가입자 수	납부액	세액공제액
납세자	남성	1,518(72.2)	4,160(73.4)	518(72.6)
	여성	583	1,509	195
	계	2,101	5,669	714
면세자	남성	87(45.8)	120(50.7)	18(50.3)
	여성	103	117	17
	계	191	237	35
계	남성	1,605(70.0)	4,281(72.5)	536(71.6)
	여성	686	1,626	213
	계	2,292	5,907	749

자료: 국세청(2017)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한편 연금가입자의 70%인 남성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2017)<sup>88)</sup>에 의하면, 2017년 남성 가구주(1,361만 가구)의 혼인상태는 유배우(1,065만 가구, 78.3%), 미혼(187만, 13.7%), 이혼(75만, 5.5%), 사별(34만, 2.5%)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성 가구주 가구의 유배우율 78.3%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을 가입한 남성 가구주 중 최대 78.3%만 여성 배우자에 의한 추가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표 V-3〉 남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2017년 기준)

(단위: 만 가구, %)

구분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가구 수	1,361	187	1,065	34	75
구성비	(100.0)	(13.7)	(78.3)	(2.5)	(5.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p. 14

이제 이러한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남성은 소득활동 배우자(가구주)로 하고 이들의 여성 배우자는 무소득자(전업주부)로 간주한다. 이를 고려하면, 연금저축 전체가입자 229만 명 중 남성이 70%(<표 V-2> 참조)이고 유배우율 78.3%(<표 V-3> 참조)를 적용하면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될 여성 배우자 최대 가입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가입률로 표현하면, 국세통계연보의 결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여성 배우자 중 21.0%, 면세자의 여성 배우자 중 2.5%가 최대로 추가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둘째, 여성 배우자는 소득활동 배우자(가구주)의 부담에 의해 IRP 제도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여성 배우자가 가입할 IRP의 보험료 월납액은 국세통계연보상 소득계층별 평균 납부액(2016년 기준)으로 한다. 즉, 이들은 남성 배우자의 납부액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세액공제는 현행 연금세제 체계를 고려하되 남성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12%를, 그 미만인 경우는 15%를 적용한다. 다만,

88)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동 비중은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소득계층별로 산출된 세액공제의 평균을 활용한다.

넷째, 세액공제액은 IRP 퇴직연금계좌로 적립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동 가정은 영국이나 뉴질랜드에는 세금 환급금을 IRP 계좌에 넣어주는 기능을 참고한 것으로,<sup>89)</sup>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한 가처분소득이 은퇴시점까지 이연되어 노후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분 만큼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액/납부액)가 발생하게 된다. 즉, 사적연금의 경우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하므로 납부액의 현재 가치는 급여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납부액(혹은 급여액)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액인 세액공제액 만큼은 연금소득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의 증가분을 연금소득개선효과로 보았다.

다섯째, 재정지출은 IRP에 가입한 여성 배우자 규모에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재정지출에 적용되는 여성 배우자 규모는 가입률을 50%, 100%의 두 가지 경우로 하여 산출한다.

## 나. 분석결과

### 1) 세액공제만 허용 시: 면세자 제외 효과

동 방식은 현행과 같이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세액공제 허용 범위 내에 전업주부의 납부액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동 원리는 미국의 배우자 IRA, 캐나다의 배우자 RRSP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 방식에 의한 추가 대상자의 최대 규모(추가 가입 전업주부)는 납세자이면서 가입자(납세가입자)인 210만 1천 명에서 남성 가구주 비율(70%)과 이들의 유배우자 비율(78.3%)을 적용한 115만 1천 명이 된다.

〈표 V-4〉에서 추가 가입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앞의 가정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남성 배우자인 가구주(납세자)의 평균 납부액과 동일한 269만 9천 원이고 이로

89) <http://retirement.miraeasset.com /contents/167B4F963E057492E0530100007FA998>

인한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4만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2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소득자의 결정세액은 4만 9천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소득계층의 세액공제액 3만 6천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는 해당 집단에서 1만 3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결과 동 집단의 여성 배우자가 추가로 납부할 경우 모두 세액공제 대상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2천만 원 이상 과세표준 소득자의 결정세액을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추정된 추가 세액공제액보다 많은 결정세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0)</sup> 따라서 2천만 원 이상 과세표준 소득자 집단에서도 여성 배우자의 추가적인 납부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의 가정에서 설정한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를 추정하면 12.6%가 된다.

연간 재정지출효과를 살펴보면, 추가 가입 대상인 여성 배우자가 모두 가입(115만 1천 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3천 910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대상자의 50%만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1천 960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90) 각 소득계층별 2016년 기준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4만 9천 원, 2~3천만 원은 19만 3천 원, 3~5천만 원은 92만 원, 5~8천만 원은 299만 8천 원, 8천만 원 초과는 1,621만 6천 원, 전체는 308만 6천 원으로 나타남

〈표 V-4〉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효과

(단위: 천 원, 천 명, %)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원	3-5천만원	5-8천만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총급여자 수	7,430	3,145	3,481	2,391	1,293	17,740	
1인당 총급여액(A)	10,539	24,826	39,074	63,460	120,593	33,827	
납세가입자 수(전체)	1.7	33	367	910	789	2,101	
납세가입자 수 (남성 가구주)	1.2	23	257	637	552	1,470	
여성 배우자 가입자 수(B)	0.9	18	201	499	432	1,151	
여성 배우자 평균납부액(C)	237	884	2,062	2,650	3,132	2,699	
여성 배우자 세액공제액(D)	36	133	309	329	376	340	
연금소득개선효과 (D/A×100)	15.0	15.0	15.0	12.4	12.0	12.6	
연간 재정지출 <sup>1)</sup> (10억 원)	100% 가입	0.03	2.4	62.2	164	163	391
	50% 가입	0.02	1.2	31.1	82	81	196

주: 1) 연간 재정지출은 B×C에서 단위를 10억 단위로 조정하여 산출하고 B에서 배우자의 가입률을 각각 100%, 50%로 설정하여 산출함

2) 연금소득개선효과는 세액공제액(D)/평균납부액(C)의 비율로 산출함

3) 배우자 가입자 수(B)=연금저축 가입자 수×70%×78.3%

4)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납세자 중에서 가입자 수로 설정함

## 2)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면세자 포함 효과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은 앞서와 유사한 방법이나 전업주부의 납부액이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수준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면세자의 가입률이 2.5%인 상황에서 환급형 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면세자의 배우자도 그만큼 납부할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의 가입률인 2.5%만큼 추가적으로 가입 규모가 증가되고, 재정지출은 5%(면세자 2.5%와 배우자 2.5%)의 가입자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최대 규모는 전체 가입자 229만 2천 명에 남성 가구주 비율(70%)과 이들의 유배우자 비율(78.3%)을 적용하면 추가 가입대상 전업주부 규모는 125만 6천 명이 된다.

〈표 V-5〉에서 추가 가입한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57만 8천 원,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2만 7천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는 12.7%로 산출되었다.

연간 재정지출효과를 살펴보면, 대상 배우자가 모두 가입(125만 6천 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4천 110억 원 정도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대상 배우자의 50%만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2천 50억 원 정도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V-5〉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전체)

(단위: 천 원, 천 명, %)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총급여자 수	7,430	3,145	3,481	2,391	1,293	17,740	
1인당 총급여액(A)	10,539	24,826	39,074	63,460	120,593	33,827	
연금저축 가입자 수	25	114	439	924	789	2,292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구주)	18	80	307	647	553	1,604	
배우자 가입자 수(B)	14	63	240	506	433	1,256	
배우자 평균납부액(C)	356	953	1,999	2,640	3,132	2,578	
배우자 세액공제액(D)	53	143	300	328	376	327	
연금소득개선효과 (D/A×100)	15.0	15.0	15.0	12.4	12.0	12.7	
연간 재정지출 <sup>1)</sup> (10억 원)	100% 가입	0.73	9.0	72.1	166	163	411
	50% 가입	0.37	4.5	36.0	83	81	205

주: 1) 연간 재정지출은 B×C에서 단위를 10억 단위로 조정하여 산출하고 B에서 배우자의 가입률을 각각 100%, 50%로 설정하여 산출함

2) 연금소득개선효과는 세액공제액(D)/평균납부액(C)의 비율로 산출함

3) 배우자 가입자 수(B)=연금저축 가입자 수×70%×78.3%

4)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납세자 및 면세자 모두를 고려하여 가입자 수로 설정함

이러한 연금소득효과와 재정지출효과를 과세자와 면세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효과를 비교하면, 납세자는 12.6%, 면세자는 14.8%로 면세자가 2.2%p 높은 소득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재정지출효과를 비교하면, 대상자 모두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100% 가입) 납세자에 지원되는 금액은 3천 910억 원, 면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9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면세자 중 추

가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추진할 경우 면세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6〉 배우자 기여분의 연금소득개선 및 재정지출효과

(단위: %, 십억 원)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원	3-5천만원	5-8천만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납세자	연금소득개선효과	15.0	15.0	15.0	12.4	12.0	12.6	
	연간 재정지출 (10억 원)	100% 가입	0.03	2.4	62.2	164	163	391
		50% 가입	0.02	1.2	31.1	82	81	196
면세자	연금소득개선효과	15.0	15.0	15.0	13.4	12.0	14.8	
	연간 재정지출 (10억 원)	100% 가입	0.70	6.6	9.8	2.0	0.1	19.2
		50% 가입	0.35	3.3	4.9	1.0	0.0	9.6
전체	연금소득개선효과	15.0	15.0	15.0	12.4	12.0	12.7	
	연간 재정지출 (10억 원)	100% 가입	0.73	9.0	72.1	166	163	411
		50% 가입	0.37	4.5	36.0	83	81	205

주: 납세자와 면세자에 대한 세부적 결과는 부록을 참조바람

##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 가. 연금정책 기본방향

여성 관련 연금정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해외사례, 통계적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할 때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 여건이나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관련 연구 기관 및 전문가들에 의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동시장과 공

적연금제도의 개선 논의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사적연금정책의 개선 방향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육아 등 사회적으로 기여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여 연금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근로친화형 노동시장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근로친화형 노동시장 정책은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워라벨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워라벨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문제는 여성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남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의 원동력은 여성의 경활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남성 배우자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확대했고, 스웨덴 정부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sup>91)</sup>

또한 재정적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활용하여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을 충분히 회복하거나, 사내 복지기금 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등에서 여성의 사적연금 기여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여성정책 수준은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성 관련 공적연금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역할이 낮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최소한 선진국의 개선 노력만큼은 추진해 갈 필요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더욱 빠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성별 격차

91) 조선비즈(2017. 10. 09), “스웨덴 성공 비결은 ‘아버지 의무 육아휴가제’...“여성 경제활동 늘리니 출산률도 높아져”

도 현저히 크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는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문제는 향후 선진국의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의 협조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에서는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

### 1)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등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

앞의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가입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 근로자 위주의 가입에서 전업주부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연금으로 역할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범위 확대과정에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이 배우자 IRP의 기여금에 대해서 소득활동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허용해주거나, 일본과 같이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가입대상에 포함하여 수급 시 연금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정책적 지원은 약하나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17년 7월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을 허용한 IRP 제도에 대해 전업주부의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혹은 보조금 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제혜택 혹은 보조금 정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분할연금, 부부연생연금의 제도화 및 종신연금화 유도

앞서 살펴본 미국,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분할연금은 단순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이외에 연금제도의 이념을 고려함으로써 단순히 재산권적 성격이 아니라 사회보장권까지 고려되어 퇴직연금의 분할연금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퇴직연금의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부연생연금화됨으로써 유족배우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분할연금 및 연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여성 관련 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신연금 급여수준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재원은 일시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혹은 기타소득세)를 강화하여 그 납세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Spousal RRSP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배우자의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가 여성 노후 연금수급권 획득(71세 이후 연금수급권자의 자격을 얻음)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 관련 사적연금에 있어서 지원과 함께 종신연금화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노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여성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 관련 연금의 종신연금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세제혜택 및 보조금 강화 정책

앞서 살펴본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한 비과세 허용은 납부단계 및 수급단계에 적용되는 여성 관련 세제 혜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들로 우리나라에 적용 시 여성의 노후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볼 때 현재의 남성 가입자의 배우자만 가입 대상으로 가정한 것

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인식 및 노후자산으로 연금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될 경우 가입하지 않은 남성 및 여성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방향에 따라 가입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관련 IRP(이하 개인연금 포함) 상품개발에 있어 현행 세제혜택을 확대한 세제적격(보조금 포함) 및 세제비적격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업주부가 가입한 IRP에 현행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연금형태의 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적립금 과소, 부득이한 경우<sup>92)</sup> 등)으로만 일시금을 수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동 세액공제 금액이 연금계좌에 다시 적립되도록 하면 보다 강화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 및 육아기간 등 사회적기여 기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재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적 지원이 어렵다면, 선진국(칠레 등)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향후 수급 시 고용보험 기금 등의 활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 사적연금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활성화된다면 앞에서 추적한 노후소득보장 수준보다 높은 정책적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지원을 공적연금제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는 복지제도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어 복지제도의 불가역성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및 보조금 정책은 세제개편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92) 부득이한 경우는 현행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주택마련, 파산 등)과 유사한 조건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 4) 기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간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55세로 설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의무화 연령인 60세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 취지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에 대해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기초로 발생하는 유족연금도 자연스럽게 60세 이후로 하되 이전에 수급을 원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두어 저리대출 형태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수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설정함으로써 공·사연금제도 간 유기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여성의 경우 남편 사망 이후 홀로 남게 되는 기간에 대한 노후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65세 이전보다는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전에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는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소득원의 활용이 아니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해소해 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물론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 수급조건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앞에서 설명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강온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 VI. 결론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고, 이후 고령화 현상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도 과거에 비해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고령화 과정에서 여성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단순히 과거의 방식에 따른 순응적 대응보다 여성 노인에 초점을 맞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는 연금정책을 활용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제고 방향을 검토하였다. 여성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공적연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동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지 않았던 사적연금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의 여성 관련 노후소득 강화는 기본 방향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출입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공적연금 측면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되,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의 역할 수준을 지향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제공하고, 출산, 양육 등 사회적 기여 행위에 대해서는 기여로 간주해 주는 출산·육아크레딧(기여인증제)을 제공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에서 여성의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할이 노후빈곤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관련하여 공적연금정책의 확대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은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공적부문의 재정문제 등으

로 인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공·사 협력의 여성연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후소득 제고를 위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무리한 확대는, 복지제도가 갖는 불가역성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선진국의 연금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수준은 공적연금을 통해 추진하되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앞서 설명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비용효과적이라는 OECD에서 나온 연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허용 등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분할연금, 부부연생연금을 사적연금제도에 제도화하고 이를 종신연금화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에서의 연금상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관련된다. 셋째, 사적연금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급연령을 정년 의무화 연령이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대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복지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대응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선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 등 그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다양한 개선안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다가올 미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대책에 한 발 더 나아가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적극적 활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 노인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고령화의 문제가 아닌 보다 섬세한 접근을 통해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을 제고하는 연금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때다.

## 참고문헌

- 강성호·김동겸(2018),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고령화리뷰』, 제18호, 보험연구원
- 강성호·김영옥(2012), 「국민연금 수급률 추정 및 성별 연금격차 분석」, 『여성연금정책 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강성호·김철주·최은아(2007), 『여성의 연금수급권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개선방안연구 - 유족, 부양가족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 강성호·정봉은·김유미(2016), 『정년연장의 노후소득개선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보험연구원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 국민연금공단(2018), 『201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연구원(2012), 『해외 공사적연금제도 I: 유럽권』
- 국세청(2017), 『2017 국세통계연보』
- 권문일(2006), 「여성연금수급권 확충전략에 대한 국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경아·유호선·김현수·성혜영(2014),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김성숙·유호선·홍성우(2011), 『유족연금 수급자범위와 수급권 소멸조건의 타당성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 김수성·차명기(2016),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 한국조세연구포럼
- 김영옥·김종숙·강성호·이선행(2011),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의 실효성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이정우(2013),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 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진(2018), 「OECD 주요국의 급여적정성 강화정책 및 시사점」, 『연금이슈 & 동향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류건식(2012), 「최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7a),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동겸(2017b),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연금 도입과 과제: 독일 뮌헨연금을 중심으로」, 『고령화리뷰』, 제6호, 보험연구원
- 류연규·황정임(2008), 「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 - 급여 적절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한국여성학회, pp. 73~112
- 박지원(2014),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7호
- 박진화(2015), 「젠더평등 관점에서의 스웨덴 여성연금수급권 연구 - 유급노동 수급권, 무급노동 수급권, 연금제도 규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6권 2호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8),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
- \_\_\_\_\_ (2016), 『전업주부들의 노후준비 실태』
- 서선영(2017), 「분할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제1384호, 국회입법조사처
- 석재은(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한국여성학』, 제28권,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4), 「연금의 성별 격차와 여성의 연금보장 방안」, 『보건사회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김봉근·임병인(2016),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유호선(2018), 「분할연금제도의 법적 성격 고찰」, 『연금포럼』, Vol. 69, 국민연금연구원
- \_\_\_\_\_ (2016),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_\_\_\_\_ (2013),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제도의 성평등적 발전방안」, 『국민연금』, 2013년 봄호, 국민연금연구원

- \_\_\_\_\_ (2010), 「국민연금의 양육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유호선·이지은(2011), 『크레딧 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이다미(2017), 「한국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과 성별 연금격차」, 『비판사회정책』, 57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이용하·최인덕·남기창·유현경(2016),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 연구-유족기초 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 이정우(2003),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 임미영·한인숙(2002), 「한국 국민연금의 성 불평등구조: 가입과 급여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4)
- 정연택(2017), 「탈가족화 관점에서 여성연금제도의 비교-미국, 독일, 한국의 기여방식 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3호
- 정원석(2017),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KIRI 리포트』, 제434호, 보험연구원
-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 최옥금(2014),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연금 민영화 이후 연금 개혁」, 『노인복지연구』, 통권 65호, 한국노인복지학회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연보 2017』
- 한국은행(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 홍남희(2015),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고찰」, 『법학논고』, 제49집
- 홍순구(2012),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Issue Paper』, 자본시장연구원
- OECD Korea Policy Center(2015), 「2015 한 눈에 보는 연금」
- OECD Korea Policy Center(2016),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
- Angela A. Hung and David Knapp(2015), "Impact of Divorce on Retirement

- Security”, RAND Labor & Population
- Bettio, F., Tinios, P., and Betti, G. (2013), “The Gender Gap in Pensions in the EU”, European Commission
- Brocas, A. and C. Zaidman(1998), “Social Security’s Responses to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6th General Assembly, Marrakech
- Brugiavini, A., G. Pasini and E. Trevisan(2012), “Maternity Leave Arrangements: The Impacts on Women’s Careers and Pensions”, Paper presented at the Royal Economic Society’s 2012 annual conference on Risk and Insurance, Vol. 36, No. 3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5),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 Nürnberg; Bildung und Wissen
- Camila Arza(2015), “The gender dimensions of pension systems: Policies and constraints for the protection of older women”, discussion paper, UN Women
- Chybalski & Marcinkiewicz(2016), *The Replacement Rate: An Imperfect Indicator of Pension Adequacy in Cross-Country Analyses*, Social Indicator Research
- Collin W. Fritz and Associates, Inc.(2013), “Pension Digest-The Spousal IRA is now the Kay Bailey Hutchison Spousal IRA”
- D’Addio(2015), “The Gender Pension Gap in OECD countries: Socio-Economic Factors, Pension systems design and Rules that matter”, OECD unpublished manuscrip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5), “Consultations on a Voluntary Supplement to the Canada Pension Plan”
- DQYDJ(2017), *History of the IRA Contribution Limit*
- EC(2018), “Current and future income adequacy in old age in the EU”, *Pension adequacy report 2018*

- \_\_(2011), “The socio-economic impact of pension systems on the respective situations of women and men and the effects of recent trends in pension reforms”, *Synthesis Report*
- \_\_(2006, 8),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Synthesis report*
- EU(2009), “Updates of current and prospective theoretical pension replacement rates 2006-2046”
- European Parliament(2016), *The gender pension gap: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women without children*
- European Parliament News(2017), “The 40% gender pension gap: how Parliament wants to narrow it”(interview)
- GESB(2017), “Spouse contributions”
- Ginn, Jay.(2003), *Gender, pensions and the life course*, Bristol: The Policy Press
- HM Revenue & Customs(2018), “Guidance Pension Schemes Rates-Tax charges on payments from registered pension schemes”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Canada(1998). “The income security program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ISSA(2017),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 \_\_(2016),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Europe”
- Internal Revenue Service(2018),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Publication 590-A
- James, E., Edwards, A.C., and Iglesias, A.(2010), “Chile’s New Pension Reforms”,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 Kritzer(2008), “Chile’s Next Generation Pension Reform”, *Social Security Bulletin*
- Linda Luckhaus(2000), “Equal treatment, social protection and income security for women”,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139 (2)
- Najat El Mekkaoui de FreitasCindy DucKarine BriardSabine MageBérangère Legendre(2011), “Career Interruptions: How They Impact Pension Rights?”,

-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 Issues and Practice, Vol. 36, No. 3
- OECD(2018), “Is the Last Mile the Longest? Economic Gains from Gender Equality in Nordic countries”
- \_\_\_\_\_(2017a), “Designing funded pension arrangements given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nd behavioural biases”,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 \_\_\_\_\_(2017b), *Pension at a Glance 2017*
- \_\_\_\_\_(2017c), *Preventing Ageing Unequally*
- \_\_\_\_\_(2017d), “The impact of tax incentives and other policies on retirement savings: A literature review”,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 \_\_\_\_\_(2017e),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 \_\_\_\_\_(2015a),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 \_\_\_\_\_(2015b), *Preventing Ageing Unequally*
- Palmer, Edward(2000), “The Swedish pension reform model : framework and issu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 Practitioner(2014), “Reduction in tax charge on death”
- Prudential(2017), “Freedom and choice in pensions - A guide to the pension reforms”
- Rafael Rofman, Eduardo Fajnzylber, German Herrera(2008), “Reforming the Pension Reforms: The Recent Initiatives and Actions on Pensions in Argentina and Chile”, World Bank
- Scottish Widow(2017), *Women and Retirement Report 2017*
- Tanaka, Kotaro(2007), “Normative Issues of the Public Pension in Japan”,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6(1)
- Women’s Budget Group(2017), “The gender gap in pensions”
- 大和総研(2017. 10. 5), 個人型確定拠出年金 (iDeCo) の加入状況
- 佐川 あぐり(2018. 3. 5) 個人型確定拠出年金 (iDeCo) の加入状況, 大和総研
- 厚生労働省, iDeCo (個人型確定拠出年金) の概要(<https://www.mhlw.go.jp>)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http://www.oecdkorea.org/home/home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일본 기업연금연합회(<https://www.pfa.or.jp/index.html>)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

EC(<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49&langId=en>)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

ISSA (<https://www.issa.int/en>)

MISSOC(<http://www.missoc.org/>)

Income Tax Regulations s. 103(4)(<https://www.taxtips.ca/rrsp/withholdingtax.htm>)

OECD Gender Data Portal

OECD ilibrary(<https://www.oecd-ilibrary.org/>)

Royal Bank(<https://www.rbcroyalbank.com>)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

GESB(<https://www.gesb.wa.gov.au/>)

# 부록 I. 배우자 기여분 세액공제 허용효과 I

〈부록 표 I-1〉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면세자 대상)  
(단위: 천 원, 천 명, %)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총급여자 수		5,871	1,012	787	70	2.7	7,742
1인당 총급여액(A)		8,805	24,742	37,452	57,099	139,045	14,280
연금저축 가입자 수		23	82	72	14	0.5	191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구주)		16	57	50	10	0.3	134
배우자 가입자 수(B)		12.8	45	39	7.6	0.3	105
배우자 평균납부액(C)		364	981	1,674	1,991	2,660	1,243
배우자 세액공제액(D)		55	147	251	267.5	319.2	184
연금소득개선효과 (D/A×100)		15.0%	15.0%	15.0%	13.4%	12.0%	14.8%
연간 재정지출 <sup>1)</sup> (10억 원)	100% 가입	0.70	6.6	9.8	2.0	0.1	19.2
	50% 가입	0.35	3.3	4.9	1.0	0.0	9.6

주: 1) 연간 재정지출은 B×C에서 단위를 10억 단위로 조정하여 산출하고 B에서 배우자의 가입률을 각각 100%, 50%로 설정하여 산출함

2) 연금소득개선효과는 세액공제액(D)/평균납부액(C)의 비율로 산출함

3) 배우자 가입자 수(B)=연금저축 가입자 수×70%×78.3%

4)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납세자 및 면세자 모두를 고려하여 가입자 수로 설정함

## 부록 II. 배우자 기여분 세액공제 허용효과 II

〈부록 표 II-1〉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납세자 대상)

(단위: 천 원, 천 명, %)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총급여자 수		1,559	2,133	2,695	2,321	1,291	9,998
1인당 총급여액(A)		17,066	24,865	39,548	63,652	120,555	48,963
연금저축 가입자 수		1.7	33	367	910	789	2,101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구조)		1.2	23	257	637	552	1,470
배우자 가입자 수(B)		0.9	18	201	499	432	1,151
배우자 평균납부액(C)		237	884	1,726	2,650	3,132	2,699
배우자 세액공제액(D)		36	133	309	329	376	340
연금소득개선효과 (D/A×100)		15.0%	15.0%	17.9%	12.4%	12.0%	12.6%
연간 재정지출 <sup>1)</sup> (10억 원)	100% 가입	0.03	2.4	62.2	164	163	391
	50% 가입	0.02	1.2	31.1	82	81	196

주: 1) 연간 재정지출은 B×C에서 단위를 10억 단위로 조정하여 산출하고 B에서 배우자의 가입률을 각각 100%, 50%로 설정하여 산출함

2) 연금소득개선효과는 세액공제액(D)/평균납부액(C)의 비율로 산출함

3) 배우자 가입자 수(B)=연금저축 가입자 수×70%×78.3%

4)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납세자 및 면세자 모두를 고려하여 가입자 수로 설정함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진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역·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역·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중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 간행물

---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KIRI 포커스 모음집</li> <li>· KIRI 이슈 모음집</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KIRI 포커스 모음집</li> <li>· KIRI 이슈 모음집</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KIRI 포커스 모음집</li> <li>· KIRI 이슈 모음집</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5 / cbyun@kiri.or.kr)



## 저 자 약 력

### 강 성 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 김 동 겹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dgkim@kiri.or.kr)

연구보고서 2018-20

##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

ISBN 979-11-85691-97-8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